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2023. 11.

(협동조합)지방자치의정연구원

제 출 문

예산군의회 의장 귀하

연구단체명: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회 회원: 김영진 의원(대표), 임종용 의원, 김태금 의원, 이길원 의원

이 보고서를 「예산군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 11.

(협동조합)지방자치의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윤진훈(협동조합)지방자치의정연구원

연구원: 최민수(협동조합)지방자치의정연구원

연구원: 박찬수(협동조합)지방자치의정연구원

※ 이 연구용역 보고서의 저작권은 예산군의회에 있으며, 보고서의 내용은 예산군의회
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4
1. 연구 배경	4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1. 연구 범위	5
2. 연구 방법	6
3. 연구 성과 및 활용	7

제2장 사무위탁의 개요

제1절 사무위탁의 개념과 근거·유형	8
1. 사무위탁의 개념	8
2. 사무위탁의 근거	8
3.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등의 차이	10
4.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비교	14
5. 사무위탁 유형	15
제2절 사무위탁의 필요성	16
1. 행정권한/예산집행의 이전 배경 및 사유	16
2.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필요성 증대	18
제3절 민간위탁 추진 절차	19
1. 재위탁/제계약	19
2. 민간위탁 추진 절차	20

제3장 예산군 사무위탁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사무위탁 현황	24
1.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24
2. 민간위탁	25
3. 공공위탁	26
4. 대행	27
제2절 민간위탁 사업형태	27
1. 민간위탁 사업형태	27
2. 민간위탁 수탁기관 유형	29
3. 수탁기관 선정방법	29

제3절 사무위탁 예산 현황	31
1.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예산	31
2. 민간위탁 예산	32
3. 공공위탁 예산	34
4. 대행 예산	37
제4절 유형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교	38
1. 유형 자치단체 사무위탁 예산 현황	38
2. 유형 자치단체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현황	39
제5절 민간위탁 운영 현황	40
1. 민간위탁 위탁기간	40
2. 민간위탁기관 모집방법	40
3.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2
4.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43
5.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기준	44
6. 민간위탁 관리·감독 근거 및 실적	45
7.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처분요구	47
8.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47
9. 민간위탁 취소 사유	50
제6절 민간위탁 관련 제도	50
1. 민간위탁사무 지침	50
2. 민간위탁 수탁기관용 지침	51
3. 수탁기관 사무편람	51

제4장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

제1절 예산군의회의 사무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	52
1.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분석	52
2. 회의록 안의 위탁 용어 존재 형태	53
3. 유의미한 위탁 관련 발언내용 분석	55
제2절 의정활동 분야별 견제·감시 역할 분석	60
1.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현황	60
2.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62
3. 예산안 심사에서 위탁금에 대한 지적사항(상임위, 예결위)	69
4. 결산 심사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사항(상임위, 예결위)	74
5. 시정질문(5분자유발언 포함) 시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사항	75

제5장 공공·민간위탁에 대한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제안

제1절 민간위탁 운영실태 개선	79
1.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개선	79
2. 민간위탁 관리기준(지침) 제정	79
3. 수탁기관 관리·감독 점검표 작성	80
4.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지표 개발	81
5.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제도 개선	82
6. 위탁자 및 수탁자 전문교육 강화	83
7. 민간위탁 만족도 조사	83
8. 위탁협약서 보완	84
제2절 사무위탁 관련 조례 제·개정	86
1. 예산군 사무위탁 관련 조례의 문제점	86
2. 사무위탁 관련 조례의 유형	87
3. 예산군 사무위탁 관련 조례 개선 방향	88
제3절 행정사무감사 시 견제·감시 방안	147
1. 수탁기관의 인사·회계 등 적정 여부	147
2. 사업제안서/계획서 내용 이행 여부	148
3. 민간위탁금 집행과 정산 적정 여부	149
4. 수탁사업의 성과평가 적정 여부	149
5. 지도·감독 및 감사 등의 적정 여부	150
6. 민간위탁 사무의 제3자 재위탁 여부	151
제4절 예산심사 시 견제·감시 방안	151
1. 민간위탁금 예산심사	151
2.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예산심사	154
3. 대행사업비 예산심사	155
제5절 결산심사 시 견제·감시 방안	156
1. 민간위탁금 결산심사	156
2.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결산심사	157
3. 대행사업비 결산심사	158
제6절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159
1.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159
2.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운영 방안	159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사무위탁 운영실태 분석	160
제2절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	164
제3절 위탁사무에 대한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제안	166

■ 부록

1. 참고 문헌	171
2. 인터넷 자료 등	172
3.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	173
4. 예산군 민간위탁 현황	175
5. 예산군 대행 현황	17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행정사무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를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예산군에서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있다.¹⁾

최근에 보건·복지 등 새로운 행정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하여 공공부문의 인력 및 예산은 제한되어 있어 예산군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를 포함한 사무를 예산군새마을회,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 있다.

예산군에서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제정된 이래 다양한 사무가 민간에 위탁되고 있다. 2023년도 예산군 예산(본예산) 중 위탁예산 규모는 932억 2,400만원으로서 이는 일반회계 7,328억 9,300만원의 12.72%에 해당된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고 있으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공공위탁(70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군의회 동의제도가 없는 등 군의회의 견제·감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군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과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의 미비와 공공위탁을 규율하는 조례가 없어 위탁에 대한 제도 및 의회 견제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견제 방안 등이 필요

1)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다.

2. 연구 목적

최근 예산군 사무 중 위탁사무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위탁사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예산군의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사무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군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통해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민간위탁 관리기준(지침), 수탁기관 관리·감독 점검표 작성 등 운영실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예산군의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견제·통제 장치를 보완하도록 한다.

셋째, 군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군의회의 견제·감시 등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넷째, 수탁기관의 계약조건 이행 여부 및 성과평가 결과가 재계약 시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 조건이나 계약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그 결과를 재계약 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다섯째,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은 정치적, 재정적, 행정적 이해관계 가운데서 결정된다. 하지만 위탁하는 것만으로 비용 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쟁력 있는 위탁기관,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이익을 우선하고 공동체의 편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예산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군의회의 역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연구 범위는 예산군의회 제8대 기간(2018년~2022년) 중의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역할을 분석한다. 그리고 예산군과 인구 및 재정규모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금 실태를 비교·분석한다.

예산군 사무위탁 운영실태 분석에서는 사무위탁 현황, 민간위탁 사업형태, 사무위탁 예산현황, 유형자치단체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현황, 민간위탁 운영 현황, 민간위탁 관련 제도를 분석한다.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은 예산군의회 의원들의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 의정활동 분야별 견제·감시 역할 분석을 한다.

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기초자료에 대한 문헌조사와 위탁사무에 대한 연구논문 등을 참조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에 대한 실태 및 평가 등을 살펴본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예산군 위탁사무 실태 및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지적사항 조사·분석

- 예산군 위탁사무에 대한 조례,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실태를 분석한다.
- 제8대 예산군의회 본회의/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하여 의정활동 분야별 견제·감시 역할을 분석한다.
- 자치단체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부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및 지적사항 등을 체크하여 연구에 참고한다.

나. 다른 자치단체의 위탁사무 운영실태 파악

- 다른 자치단체의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 제도 등을 조사하고, 이를 예산군의회에 접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다. 간담회 개최를 통한 의원 의견 수렴

- 예산군 위탁사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진과 연구단체 소속 의원과의 간담회 1회 실시

- 간담회를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위탁사무 개선방안(시안) 제시

라. 전문가 자문

-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연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제고한다.

마.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에 대한 군의회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방안 제시

- 위탁사무와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및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견제·감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연구 성과 및 활용

- 예산군 위탁사무에 대한 군의회의 견제·감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도록 한다.
- 연구결과를 군의회 의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군의회의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예산낭비 예방은 물론, 위탁사무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사무위탁의 개요

제1절 사무위탁의 개념과 근거·유형²⁾

1. 사무위탁의 개념

자치단체에서 사무의 위탁은 법령, 조례, 규칙에 정해진 자치단체(단체장)의 권한 및 사무를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위탁,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대행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있어 위의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일 때는 “사무위탁”으로 사용한다)

사무의 위탁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공공위탁”이 있다. 민간위탁의 대상은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 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권한과 사무이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조³⁾ 정의에서도 동일하게 이를 정의하고 있다. 사무의 위탁과 위임, 대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행정사무의 위탁과 위임, 대행 비교

구분	위탁	위임	대행
개념	수탁자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정사무 수행	수임자의 명의로 책임으로 행정사무 수행	행정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 않음
수탁자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보조기관, 하급행정기관, 다른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포함), 법인
권한 및 책임	이전	이전	이전되지 않음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음.

2. 사무위탁의 근거

가. 법적근거

2) 민간위탁의 개요는 최민수(2022), 「자치단체 민간위탁/보조금/공유재산 가이드 북」을 인용하였음.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자치단체(단체장)가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 조례, 시행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행정권한의 법정주의라 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단체장)가 법령 등에서 부여한 행정권한(사무처리)을 민간에 위탁하려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자치단체의 사무(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4)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 법령 등 각 법령의 위탁 규정, 자치단체 조례의 위탁 규정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위탁의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이고,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그 근거가 있다. 그리고 일부 자치단체(충남도, 부산광역시, 구리시 등)에서는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표 2-2> 사무위탁의 법적 근거(예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4)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위탁의 법적 근거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인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민간위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공공단체 및 그 기관”에 위탁하는 공공위탁 근거를 따로 두고 있다. 공공단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설치하는 지방공사 및공단, 출자·출연기관을 공공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에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적용하고, 이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위탁(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대행이 있을 수 있다.

3.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등의 구분

가. 민간위탁

민간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민간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공위탁

“공공위탁”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단체장의 권한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문화재단 등) 등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도 위탁이 가능하다. 반면에 민간위탁으로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수 없다.

공공위탁의 수탁기관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 정부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공법인 등이 된다.

(1) 공공위탁 근거와 대상사무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단체(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위탁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도 위탁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제168조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공위탁·민간위탁·관리위탁 비교

공공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이다. 반면에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민간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표 2-3> 공공위탁과 민간위탁·관리위탁의 비교⁵⁾

구분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의미	·행정사무(시설)의 민간에 위탁	·행정사무(시설)의 공공기관에 위탁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예산 편성	·민간위탁금(307-02)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308-10)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403-02)	·민간위탁금(307-02)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공유재산법」(제27조): 영(제19조)
근거 조례	·지자체 민간위탁 조례·시행규칙	·일반적으로 관련 조례 없음. 단, 일부 지자체 있음	·지자체 공유재산 조례·시행규칙
대상(수탁) 기관	·민간기관·단체, 개인 등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지방출자·출연기관 등) ·공익법인 등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위탁사무 범위	·주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무 제외	·주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무 가능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5) 최민수, 앞의 책, p.130.

- * 공공위탁: 자치단체의 사무(시설)를 공공기관, 공공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도 위탁이 가능함.
 - * 민간위탁: 자치단체의 사무(시설)를 민간법인/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무에 한정
- <자료: 류춘호, "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통제 전략 " 「공공정책(2019년 9월호)」, p.80. 재구성>

(3) 공공위탁에서 공공단체(기관)의 의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서는 공공위탁을 "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에 위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단체(기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공공위탁이 가능한 공공단체(기관)는 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나 단체(정부공기업,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영리재단 등), ② 지자체가 출연·보조를 통해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단체, ③ 그 밖에 지자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의미한다(법제처 10-0037 해석례).

다. 대행

" 대행 "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단체장)의 권한(사무)을 대행기관(지방공기업, 공공재단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되, 그 명義와 책임은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행은 대행기관이 대외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피대행관청)의 이름과 책임으로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그 명義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적 효과는 본래의 권한자인 단체장(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자치단체에서는 " 대행 "에 대한 기본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다만, 일부 자치단체는 대행 관련 조례가 있음). 자치단체에서 대행은 일반적으로 일정 사무(사업)를 대행할 수 있다는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표 2-4> 권한대행과 업무대행

- 대행은 “권한대행”과 “업무대행”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권한대행”은 행정기관의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인데, 대행사무 처리의 법적 효과인 명의와 책임은 원래 권한자(행정기관)에 귀속됨.
 - * 단체장이 사직하거나 구속되는 경우에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음.
- “업무대행”은 단체장이 법령 및 조례상의 단체장 권한(사무)을 지방공기업 등 공공법인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행정기관의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것임.

(1) 대행과 민간위탁/지정 비교

(가) 대행과 민간위탁

“대행”과 “민간위탁”은 행정사무(시설)를 민간 등이 처리(관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처리한 사무의 책임소재 즉, 법률효과가 행정기관과 위탁(대행)기관 중 어디에 귀속하느냐에 차이가 있다.

“대행”은 그 법률효과가 본래의 권한자인 행정기관(지자체)이 행한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에 귀속한다. 이에 비해 민간위탁은 사무처리의 법률효과가 위탁받은 자(수탁자)에 귀속된다.

<표 2-5> 대행과 민간위탁의 비교

구분	대행	민간위탁
의미	실무만 대행(권한/책임은 행정기관)	민간(수탁자)의 명의/책임하에 수행
근거	「지방공기업법」, 「상하수도법」 등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책임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	수탁자(민간)의 권한과 책임
계약	공개모집,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대행 계약)	공개모집 원칙(예외적 수의계약) 3년 또는 5년(사회복지시설 5년)
지원	대행료(위탁금) 지급, 지자체 비용 부담	위탁금 지급, 예산지원 가능(계약으로 정함)
재위탁	단체장 승인 등에 의해 가능	금지

* 대행과 민간위탁은 법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할 수 없음.

(나) 대행과 지정

“대행”과 유사한 것으로서 “지정”이 있다. “지정”은 법령에 근거하여 일정한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이 행정기관이 해야 할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예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있다.

(2) 대행의 대상사무

자치단체 사무(사업) 중에서 어떤 사무가 대행할 수 있는 사무인지를 규정하는 기본 법령이나 조례는 없다(다만, 제주특별자치도와 구리시에는 대행 관련 기본조례가 있음).

일반적으로 대행사무(사업)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맡기는 사무가 된다. 어떤 사무를 법령에 따라 대행으로 맡길 것인지는 단체장이 정하게 된다.

자치단체에서 대행하는 대상사무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운영·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분뇨의 수집·처리, 상하수도 공사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무이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맡기는 경우에도 대행사무가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는 단체장이 대행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비교

민간위탁은 자치단체(단체장)의 행정권한을 민간단체 등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민간보조는 민간단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한다. 그런데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민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교부)한다.

<표 2-6>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비교

구분	민간위탁(민간위탁금)	민간보조(지방보조금)
근거 법령	「지방자치법」,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개별 조례	「지방재정법」, 「지방보조 금법」 및 개별 조례
사무주체	자치단체(행정기관)	보조사업자(개인/단체)
사업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개경 쟁입찰 원칙	신청한 보조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경비지급	위탁협약에 따라 지급	보조사업의 계획 및 보조금 신청에 따라 지급

5. 사무위탁 유형

사무위탁 유형은 예산지원을 통해 사무를 운영하는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과, 예산지원 없이 사무를 운영하는 자립형으로 구분하고 있다.⁶⁾

가. 예산지원형

(1) 시설형 위탁

행정재산의 관리와 해당 시설을 활용한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청소년수련관, 각종 복지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위탁이 이에 해당된다.

시설형 위탁에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물(행정재산)의 운영관리가 수반되므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⁷⁾해야 한다.

(2) 사무형 위탁

사무형 위탁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하게 자치단체의 사무만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로 책임하에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p. 17~18.

7)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산학연 협력지원, 에이즈 예방 홍보(사무) 등이다.

나. 자립형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 명 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병원, 야구장, 유스호스텔 등이다.

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누적 적자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와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이 가능하다. 수탁기관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예산지원형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제2절 사무위탁의 필요성⁸⁾

1. 행정권한/예산집행의 이전 배경 및 사유

가. 행정수요의 다양화

국가나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주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처리하는 사무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게 되었다. 특히, 주민복지 사무의 종류와 규모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조직이나 공무원만으로 행정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나타났다.

자치단체(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처리를 모두 직접 담당하기보다 하부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게 되었다. 즉, 자치단체(행정기관)가 처리할 사무를 다른 기관과 민간 부분에 위임 또는 위탁 등을 통해 맡기게 되었다.

8) 최민수, 앞의 책 pp.41~43.

나.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 품질 제고와 한정된 예산을 행정목표에 맞추어 제대로 집행하는 효율성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 중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사무처리를 전문적인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맡길 필요가 있게 되었다. 즉, 효율성이 있는 민간 부분의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치단체(행정기관)에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부분을 활용하는 위임·위탁 등이 일반화되고, 그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다. 행정조직과 공무원 증원의 한계

국가 및 자치단체의 사무는 공무원이 직접 처리·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공무원이 직영한다. 그런데 다양화 및 전문화되는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행정조직과 공무원의 수를 확대·증원해야 하는 데 그 실행에 한계가 있다.

자치단체는 공무원의 기준인건비제도⁹⁾를 적용하고 있어 인력 증원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민간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임·위탁 등 행정권한의 이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라. 민간협력(행정 거버넌스 등)의 확대 요청

주민은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일정 수준 이상의 품

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질 요구 등 주민만족 행정을 요구한다. 주민만족 행정을 위해서는 주민욕구를 파악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주민만족 행정은 공무원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주민을 참여시켜 함께 처리하면 그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사업(행정 거버넌스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관협력을 위한 위임·위탁 등 행정권한 이전 요청이 확대되었다.

2.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필요성 증대

가. 행정권한/예산집행 이전 사무의 급증

최근 자치단체에서는 지방행정의 다양성과 전문성, 민관협력 필요성 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 처리를 외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는 등 행정권한 및 예산집행의 이전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한 등의 이전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나. 행정권한 이전에 따른 문제 발생

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의 위임과 위탁 등은 사무처리 책임과 법률효과가 이를 처리한 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에 귀속된다. 이러한 위임·위탁사무의 처리에는 공공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나, 민간기관 등이 처리하다 보면,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최근에 행정권한/예산집행 이전에 대해서는 감사원 또는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고 내용, 신문기사 등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외에 행정권한 이전에 따른 대상자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행정서비스 품질의 저하, 예산 낭비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행정권한/예산집행 이전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지방의회의 견제·감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다. 민간위탁금 등의 예산규모 급증

자치단체에서는 행정사무(권한)를 위임·위탁, 대행과 지방보조금 지원 등

을 위한 예산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금, 출자·출연금, 지방보조금, 용역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방의회가 효과적으로 심사하고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라. 자치단체 감사기구 역할의 한계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권한/예산집행 이전에 대한 감사(監査)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자체 감사 조직 및 인력의 한계로 민간기관 등의 위탁사무 처리 등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질의·질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및 결산심사, 조례제·개정 등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권한/예산집행의 이전에 대한 감시·견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절 민간위탁 추진 절차

1. 재위탁/재계약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서는 “재계약”을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위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 재계약으로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표 2-7> 신규위탁/재위탁/재계약 비교

구분	정의
신규위탁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등에 최초로 위탁운영하는 것
재위탁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재계약	수탁기관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하는 것

2. 예산군 민간위탁 추진절차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성과측정의 용이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나.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민간위탁 여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이 되면 군수는 의회의 동의 절차를 준비하게 된다.

다. 의회 동의

군수는 동의안을 준비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동의안에는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 예산, 수탁기관 선정방식 등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 수탁기관 공모

민간위탁하기로 의회로부터 동의받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군수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등인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마.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공개모집(모집대상 제한) 결과 대상 기관의 규모·인력·장비 및 기술 수준 등 업무 운영 능력, 재정 부담 능력 및 비용 절감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바. 수탁기관 선정 공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선정 사실을 예산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여야 한다.

사.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탁기관 선정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아. 위탁계약 체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수탁기관과 민간위탁에 관한 계약(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위탁계약에는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지원 사항, 수탁기관의 의무, 관리·감독, 감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표 2-8> 예산군 위탁계약 추진 절차

위탁 추진 절차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① 사업부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생략	생략
②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위탁 여부 심사	생략	생략
③ 의회 동의	민간위탁 예산/수탁기관 선정방식 등	좌동	좌동
④ 수탁기관 공모	공개모집/제한/수의	좌동	생략
⑤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재계약, 이의신청 심사	좌동	좌동

⑥ 사업부서	수탁기관 선정 사실 홈페이지 공고	좌동	좌동
⑦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좌동	생략
⑧ 사업부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 체결	좌동	좌동

비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

제3장 예산군 사무위탁 운영실태 분석

예산군 사무위탁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항목 2개, 분석지표 8개, 세부분석지표 35개를 설정하였다. 먼저 분석항목으로 사무위탁 운영 실태와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로 2개의 분석항목을 설정하였다.

사무위탁 운영실태는 사무위탁 현황, 민간위탁 사업형태, 사무위탁 예산 현황, 민간위탁 운영 현황, 유사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교, 민간위탁 관련 제도 6개 분석지표를 설정하였다.

사무위탁 현황은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등 4개, 민간위탁 사업형태는 민간위탁 사업형태, 민간위탁 수탁기관 유형, 수탁기관 선정방법 3개, 사무위탁 예산 현황은 민간위탁 예산, 공공위탁 예산, 대행 예산 등 5개,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민간위탁 위탁기간, 민간위탁기관 모집방법 등 9개, 유사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교는 자치단체 사무위탁 등 3개, 민간위탁 관련 제도는 민간위탁사무 지침 등 3개의 분석세부지표를 각각 설정하였다.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은 예산군의회 의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과 의정활동 분야별 견제·감시 역할 2개 분석지표를 설정하였다.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은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분석 등 3개, 의정활동 분야별 견제·감시 역할은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현황,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등 5개의 분석세부지표를 각각 설정하였다. 사무위탁 운영실태 분석틀은 <표 3-1>과 같다.

<표 3-1> 사무위탁 운영실태 분석틀

분석항목	분석지표	분석세부지표
1. 사무위탁 운영실태	1. 사무위탁 현황	1.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2. 민간위탁
		3. 공공위탁
		4. 대행
	2. 민간위탁 사업형태	1. 민간위탁 사업형태
		2. 민간위탁 수탁기관 유형

		3. 수탁기관 선정방법
	3. 사무위탁 예산 현황	1.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예산
		2. 민간위탁 예산
		3. 공공위탁 예산
		4. 대행 예산
		5. 유형 자치단체와 사무위탁 예산 비교
	4. 민간위탁 운영 현황	1. 민간위탁 위탁기간
		2. 민간위탁기관 모집방법
		3.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4.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성과평가지표, 성과평가결과 사례)
		5.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기준
		6. 민간위탁 관리·감독 근거 및 실적
		7.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처분요구
		8.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9. 민간위탁 취소 사유
	5. 유사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교	1. 자치단체 사무위탁 예산 현황
		2. 자치단체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현황
		3. 예산군 사회복지시설 사무위탁 현황
	6. 민간위탁 관련 제도	1. 민간위탁사무 지침
		2. 민간위탁 수탁기관용 지침
		3. 민간위탁 만족도 조사
2.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1. 예산군의회의 위탁사무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1.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분석
		2. 회의록 안에 위탁 용어 존재 형태
		3. 유의미한 위탁 관련 발언내용 분석
	2. 의정활동 분야별 견제·감시 역할	1.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현황
		2.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3. 예산안 심사에서 위탁금에 대한 지적사항
		4. 결산 심사에서 위탁금에 대한 지적사항
		5.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포함) 시 위탁금에 대한 지적사항
2개 분석항목	8개 분석지표	35개 분석세부지표

제1절 사무위탁 현황

1.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예산군의 2023년도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 37건(39.4%), 공공위탁 54건(57.4%), 대행 3건(3.2%)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공공위탁사무가 가장 많다.

<표 3-2> 예산군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현황

구분	건수	비율(%)
민간위탁	37	39.4
공공위탁	54	57.4
대행	3	3.2
합계	94	100.0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2. 민간위탁

예산군의 2023년도 민간위탁은 총 37건으로 국별로 보면, 행정복지국 14건(37.8%), 산업건설국 21건(56.8%), 사업소 및 보건소 각각 1건(5.4%)이다.

예산군 민간위탁 사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행정복지국 분야이며 그중에서 가족지원과가 5건으로 가장 많다. 가족지원과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 자활근로사업 예산공립어린이집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등이다.

가족지원과에서 민간위탁을 가장 많이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¹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개인 등도 요건을 갖추어 단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¹¹⁾등 사회복지 관련 법 등에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1)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표 3-3> 예산군 민간위탁 현황

실/국	부서명	건수		비율(%)
행정복지국	총무과	2	14	37.8
	주민복지과	3		
	가족지원과	5		
	문화관광과	3		
	교육체육과	1		
산업건설국	경제과	2	21	56.8
	환경과	4		
	농정유통과	2		
	축산과	3		
	산림녹지과	2		
	건설교통과	2		
	도시건축과	4		
	수도과	2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	1	2.7
보건소	보건소	1	1	2.7
합계		37	37	100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3. 공공위탁

예산군의 2023년도 공공위탁은 54건이다. 공공위탁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예산군수의 권한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위탁이다.

국별로 보면, 행정지원국 5건(9.3%), 산업건설국 48건(88.9%)이다. 공공위탁은 산업건설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농정유통과는 24건(44.4%)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예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 130억 4,200만원, 대술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8억 1,700만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연건개선사업 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표 3-4>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

실/국	부서명	건수		비율(%)
기획실	기획실	1	1	1.8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1	5	9.3
	가족지원과	4		
산업건설국	농정유통과	24	48	88.9
	축산과	1		
	산림녹지과	1		
	건설교통과	8		
	도시건축과	1		
	안전관리과	1		
	수도과	12		
합계		54	54	100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4. 대행

예산군의 2023년도 대행 현황을 보면, 총 3건이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위탁관리이다.

<표 3-5> 예산군 대행 현황

연번	부서	대행사무명	대행자	근거규정	계약방법	계약기간	예산액 (천원)	인건비 (천원)
1	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	(주)세움환경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입찰	2023. 1. 1.~ 2024. 12. 31.	654,086 (인건비포함)	370,370
2	환경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위탁관리	(주)에코비트위터, 금강엔지니어링(주), 부경엔지니어링(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	공개모집	2021. 1. 1.~ 2023. 12. 31.	2,547,000	601,675
3	환경과	분뇨처리시설위탁관리	(주)제일환경	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수의계약	2021. 1. 1.~ 2023. 12. 31.	1,300,000	476,338
합계							4,501,086	1,448,383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제2절 민간위탁 사업형태

1. 민간위탁 사업형태

예산군의 2023년도 민간위탁 사업형태는 시설과 사무가 혼합된 시설사무형 위탁이 18건(56.25%), 예산만 지원하는 사무형 위탁이 12건(37.50%), 행정재산인 예산군 소유시설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가 수

반되는 시설형 위탁이 2건(6.25%)이다.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합된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은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¹²⁾

<표 3-6> 예산군 민간위탁 사업형태

사업형태	건수	비율(%)
시설+사무	18	56.25
사무	12	37.50
시설	2	6.25
합계	32	100.00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예산군의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형태는 32개 중 법인 등 단체가 28개 (87.50%), 개인 4개(12.50%)로 대부분이 법인 등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3-7> 예산군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형태

연번	사무명	유형	수탁기관
1	예산군자원봉사센터	1. 사무+시설	예산군 새마을회
2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 사무+시설	최진화
3	자활근로사업	2. 사무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4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1. 사무+시설	(사)예산군장애인연합회
5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1. 사무+시설	(사)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
6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사업	1. 사무+시설	사회복지법인 수덕
7	예산군노인요양원운영	1. 사무+시설	사회복지법인 희망송산
8	예산군시니어클럽운영	1. 사무+시설	사회복지법인 수덕
9	예산공립어린이집	1. 사무+시설	이희섭(개인)
10	국공립대방엘리움어린이집	2. 사무	오현미(개인)
11	국공립이지더원2차어린이집	2. 사무	유영실(개인)
12	예산군온종일초등돌봄센터	2. 사무	은혜도서관(성연수)
13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1. 사무+시설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
14	전국 황새모니터링 및 단계적 방사장 지원	1. 사무+시설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
15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1. 사무+시설	예산문화원
16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2. 사무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17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 시설	(주)에코비트워터, (주)두현이앤씨

12) 행정안전부 회계제도와-591(2020.2.12.)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사무의 민간위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의 위탁이 수반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에 대하여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공유재산법령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산정 등은 공유재산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임.

18	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 시설	(주)금강엔지니어링
19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	2. 사무	(주)세움환경
20	맑은누리센터시설 위탁관리	2. 사무	에이치엘에코텍(주)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위탁관리	2. 사무	(주)에코비트위터, 금강엔지니어링(주), 부경엔지니어링(주)
22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2. 사무	(주)제일환경
23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1. 사무+시설	예산농업농협협동조합
24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1. 사무+시설	사단법인 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25	한우광역브랜드육성	2. 사무	예산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26	충남한우명품화지원	2. 사무	예산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27	한우핵군우농가육성	2. 사무	예산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28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1. 사무+시설	예산군산림조합
29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 사무+시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1. 사무+시설	(주)에코비트위터 외 2개사
31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1. 사무+시설	(주)두현이앤씨 외 1개사
32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1. 사무+시설	(주)내포보부상촌

2. 민간위탁 수탁기관 유형

예산군의 2023년도 민간위탁 수탁기관 유형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일반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 총 7개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일반기업 9개(28.12%)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8개(25%), 공공기관 5개(15.63%) 등이다.

<표 3-8> 예산군 민간위탁 수탁기관 유형

(단위: 개)

수탁기관 유형	시설+사무	사무	시설	합계	비율(%)
재단법인	-	-	-	-	-
사단법인	2	-	-	2	6.25
사회복지법인	4	-	-	4	12.50
비영리단체	3	5	-	8	25.00
일반기업	3	4	2	9	28.12
공공기관	4	1	-	5	15.63
개인 등	2	2	-	4	12.50
합 계	18	12	2	32	100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3. 수탁기관 선정방법

예산군에서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¹³⁾ 위탁

13)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사무 32개 중 공개모집 17개(53.12%), 수의계약 15개(46.88%)이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 상대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중소기업 보호(필요)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용¹⁴⁾하여야 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표 3-9> 예산군 수탁기관 선정방법

연번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계약방법(%)	
				경쟁계약	수의계약
1	총무과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예산군 새마을회	공개모집	
2	총무과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최진화	공개모집	
3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수의계약
4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사)예산군장애인연합회		수의계약
5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사)예산기독교 연합복지재단		수의계약
6	가족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 사업	사회복지법인 수덕	공개모집	
7	가족지원과	예산군노인요양원운영	사회복지법인 희망송산	공개모집	
8	가족지원과	예산군시니어클럽운영	사회복지법인 수덕	공개모집	
9	가족지원과	예산공립어린이집	이희섭(개인)	공개모집	
10	가족지원과	국공립대방엘리움어린이집	오현미(개인)	공개모집	
11	가족지원과	국공립이지더원2차어린이집	유영실(개인)	공개모집	
12	가족지원과	예산군온종일초등돌봄센터	은혜도서관(성연수)	공개모집	
13	문화관광과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 연구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		수의계약
14	문화관광과	전국 황새모니터링 및 단계적 방사장 지원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황새생태연구원		수의계약
15	문화관광과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예산문화원	공개모집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2.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에서 공개모집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대상 기관의 규모,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 부담 능력 및 비용 절감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고용 승계·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4) 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2), 2022 공통교재 회계실무, p.251.

16	교육체육과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17	경제과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주)에코비트위터, (주)두현이앤씨		재계약 (수의)
18	경제과	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주)금강엔지니어링		재계약 (수의)
19	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	(주)세움환경	입찰	
20	환경과	맑은누리센터시설 위탁관리	에이치엘에코텍(주)	공개모집	
21	환경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위탁관리	(주)에코비트위터, 금강엔지니어링(주), 부경엔지니어링(주)	공개모집	
22	환경과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주)제일환경		수의계약
23	농정유통과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예산농금농업협동조합		재계약 (수의)
24	농정유통과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사단법인 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재계약 (수의)
25	축산과	한우광역브랜드육성	예산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수의계약
26	축산과	충남한우명품화지원	예산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수의계약
27	축산과	한우핵군우농가육성	예산축산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수의계약
28	산림녹지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예산군산림조합		수의계약
29	도시건축과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개모집	
30	수도과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주)에코비트위터 외 2개사	자격제한 입찰	
31	수도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주)두현이앤씨 외 1개사	자격제한 입찰	
32	관광시설사업소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주)내포보부상촌	1가: 공개모집 (2020. 5. 25 ~ 2023. 5. 24.) 2가: 재계약	
합계				17(53.12)	15(46.88)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제3절 사무위탁 예산 현황

1.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예산

예산군의 2023년도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예산 총액은 95건 337,604백만원이다. 그 중 공공위탁 예산이 288,533백만원(85.5%)으로 가장 많고, 민간위탁 39,411백만원(11.7%), 대행 9,660백만원(2.8%)이다.

공공위탁 예산은 2023년도를 포함하여 위탁기간 전체의 예산으로 보인다.

<표 3-10> 예산군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예산 현황

구분	건수	예산액(백만원)	비율(%)
민간위탁	37	39,411	11.7
공공위탁	54	288,533	85.5
대행	4	9,660	2.8
합계	95	337,604	100.00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2. 민간위탁 예산

예산군의 2023년도 민간위탁 예산 현황을 보면, 위탁사업 건수 37개 총 39,411백만원(2023년 기준)이며, 사업별 평균예산은 10억 6,500만원이다.

민간위탁은 13개 부서에서 37개 사무를 31개 기관에 위탁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업 중 일부는 민간위탁이 아닌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책임과 권한 행사를 예산군에서 해야 하는데, 사업의 권한과 책임을 수탁자에게 부여하는 민간위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1> 예산군 민간위탁 예산 현황(2023. 6. 30.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사무명	수탁기관	위탁액	위탁기간	선정방법	위탁근거	비고
계	13	37	31	39,411	-	-	-	
1	총무과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328.6	2021.1.1. ~ 2023.12.31.	공개모집	영유아보육법 제14조	
2	총무과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사)예산군새마을회	0	2022.1.1. ~ 2023.12.31.	공개모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3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	1,416	2023.1.1. ~ 2023.12.31.	수의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4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	(사)예산군 장애인 연합회	1,600	2022.1.1. ~ 2026.12.31.	수의계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5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사)예산기독교 연합복지재단	493	2022.5.1. ~ 2026.12.31.	수의계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6	가족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수덕	871	2020.1.1. ~ 2024.12.31.	공개모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 조례 제5조	
7	가족지원과	예산군노인요양원운영	사회복지법인희망송산	-	2023.1.1. ~ 2027.12.31.	공개모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예산군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8조	
8	가족지원과	예산군시니어클럽운영	사회복지법인 수덕	310	2019.1.1. ~ 2023.12.31.	공개모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9	가족지원과	예산공립어린이집 운영	이희섭(개인)	-	2022.9.1. ~ 2027.8.31.	공개모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재위탁
10	가족지원과	예산군온종일	은혜도서관	127	2022.1.1. ~	공개모집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제 2항	재위탁

		초등돌봄센터			2024.12.31.			
11	문화관광과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황새생태 연구원	272	2023.1.1. ~ 2023.12.31.	수의계약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제12조	
12	문화관광과	전국황새모니터링사업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황새생태 연구원	120	2023.1.1. ~ 2023.12.31.	수의계약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제12조	
13	문화관광과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예산문화원	-	2020.2.9. ~ 2025.2.8.	수의계약	작은영화관운영관리조례 제8조1항	재계약
14	교육체육과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16	2023.1.1. ~ 2024.12.31.	수의계약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	재계약
15	경제과	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위탁	(주)에코비트워터 (주)두현이앤씨	1,837	2021.1.1. ~ 2023.12.31.	수의계약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재계약
16	경제과	농공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위탁	금강엔지니어링(주)	1,230	2021.1.1. ~ 2023.12.31.	수의계약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재계약
17	환경과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 관리	에이치엘에코텍(주)	5,159	2023.1.1. ~ 2023.12.31.	공개모집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18	환경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주)에코비트워터	2,547	2023.1.1. ~ 2023.12.31.	공개모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19	환경과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주)세일환경	1,300	2023.1.1. ~ 2023.12.31.	수의계약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0	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주)세움환경	1,057	2023.1.1. ~ 2024.12.31.	자격제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1	농정유통과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민간위탁	예산농금농업협동조합	-	2020.10.1 ~ 2023.9.30.	수의계약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기본조례 제4조, 예산군 권역별 거점 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22	농정유통과	예산군행복마을 지원센터	사단법인 예산군 행복마을 네트워크	500	2022.1.1. ~ 2024.12.31.	공개모집	예산군 행복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조례	재계약
23	축산과	한우광역브랜드육성	예산축산업협 동 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315	2023.1.1. ~ 2023.12.31.	수의계약	충청남도 축·산사업시행지침	
24	축산과	충남한우명품화지원	예산축산업협 동 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127	2023.1.1. ~ 2023.12.31.	수의계약	충청남도 축·산사업시행지침	
25	축산과	한우해군우농가육성	예산축산업협 동 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90	2023.1.1. ~ 2023.12.31.	수의계약	충청남도 축·산사업시행지침	
26	산림녹지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예산군산림조합	4,278	2023.2.22. ~ 2023.12.31.	수의계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7	건설교통과	예산군 특별교통 수단 운영	충남지체 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537	2022.01.01. ~ 2024.12.31.	공개모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28	도시건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	58	2021.1.1. ~ 2023.12.31.	공개모집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1항	
29	산림녹지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예산군산림조합	4,278	2023.2.22. ~ 2023.12.31.	수의계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30	건설교통과	예산군 특별교통 수단 운영	충남지체 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537	2022.01.01. ~ 2024.12.31.	공개모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31	도시건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	58	2021.1.1. ~ 2023.12.31.	공개모집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1항	
32	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및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	2021.1.1. ~ 2023.12.31.	공개모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제12조 4항	
33	도시건축과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608	2018.2.1. ~ 2024.1.31	공개모집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지침 제3절 제25조 및 제26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34	수도과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 시설	(주)에코비트워터 외 2개사	3,711	2021.01.01. ~	자격제한 입찰	하수도법제19조2,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	

		관리대행 용역			2023.12.31			
35	수도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주)두현이엔씨 외 1개 사	2,363	2022.01.01. ~ 2024.12.31	자격제한 입찰	하수도법제19조2,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	
36	관광시설 사업소	예산군내포보부상촌 관 리 운영	(주)내포보부상촌		2023.5.25.~ 2026.5.24.	공개모집 (최초)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재계약
37	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 분석위탁운영	순천향대학교 산학협 력단	67,904	2023.3.1.~ 2023.12.31.	재계약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 조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 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재계약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3. 공공위탁 예산

예산군의 2023년도 공공위탁 예산 현황을 보면, 위탁사업 건수 54건 총 위탁예산 2,885억 3,300만원이며, 수도과 12건 2,162억 1,000만원, 농정유통과 19건 452억 9,500만원이다.

공공위탁은 10개 부서에서 54개 사무를 9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과는 「하수도법」 제74조15)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분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상수도정비사업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공공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정유통과는 「농어촌정비법」 제56조16)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 15)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6) 제56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2016. 1. 19.>
 1. 한국농어촌공사
 1의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제2조제10호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2.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3.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마을정비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이하 “주택건설 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4.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제2조제10호바목, 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해당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제103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지정 제안자를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17)에 따라 농어촌취약지역 생활 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등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공공위탁하고 있다.

<표 3-12> 예산군 공공위탁 예산

공공위탁 기준일: 2023. 6. 30.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사무명	수탁기관	위탁액	위탁기간	선정방법	위탁근거	비고
계	10	54	9		-	-	-	
1	기획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8	2023.1.1.~2023.12.3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2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	359	2023.2.8.~2023.12.31.	자격제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	
3	가족지원과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운영대행	(재)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521	매년	수의계약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4	가족지원과	예산군청소년수련관운영대행	(재)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556	매년	수의계약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5	가족지원과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운영대행	(재)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225	매년	수의계약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6	가족지원과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대행	(재)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137	매년	수의계약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7	농정유통과	예산항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3,042	2021.~2025.	수의계약	지역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19호및21호	
8	농정유통과	하포리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972	2021.4.~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착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9	농정유통과	화산리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946	2021.4.~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착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0	농정유통과	마사리 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500	2021.4.~	수의	농어촌정착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위하여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및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7.>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116조제1항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圈域)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1. 주거환경의 개선
2.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3.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4. 농어촌의 경관 보전
5. 농어촌관광의 진흥,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예산지사		2023.12.	계약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1	농정유통과	계정2리 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600	2021.4.~ 2023.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2	농정유통과	신양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00	2022.1.~ 2025.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3	농정유통과	신종1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000	2022.3.~ 2024.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4	농정유통과	상하1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0	2022.3.~ 2024.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5	농정유통과	만사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0	2022.3.~ 2024.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6	농정유통과	증곡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500	2022.3.~ 2024.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7	농정유통과	장산2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500	2022.3.~ 2024.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8	농정유통과	하평리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896	2022.5.~ 2025.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19	농정유통과	예가정성 농특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	(재)충남창조 경제혁신센터	120	2023.3.30~ 2023.12.31.	수의 계약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20	농정유통과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10	2023.4.5.~ 2023.12.20.	해당 없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농산물에너지시설 지침)	(유타액수정·1 포기)
21	농정유통과	대술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5,817	2018.1.~ 2023.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2	농정유통과	신암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4,000	2019.2.~ 2023.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3	농정유통과	오가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4,000	2019.2.~ 2023.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4	농정유통과	황계리 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500	2020.4.~ 2023.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5	농정유통과	마전1리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 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92	2020.6.~ 2023.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6	농정유통과	대롤리 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500	2021.4.~ 2023.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7	농정유통과	계정2리 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600	2021.4. ~ 2023.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8	농정유통과	신양면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00	2022.1.~ 2025.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9	농정유통과	신종1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000	2022.3.~ 2024.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30	농정유통과	상하1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0	2022.3.~ 2024.12.	수의 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31	축산과	내수면수산생태기반구축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5,400	2021.4.15~ 2025.12.31.	수의 계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충청남도균형 발전사업)
32	산림복지과	내포문화숲길 운영 관리 위탁사업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	378	2023.2.1~ 12.31.	수의 계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33	건설교통과	고덕면 상궁리 배수로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400	2022.12.13~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제115조	
34	건설교통과	삽교 송산리 보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0	2022.9.29~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제115조	
35	건설교통과	오가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00	2022.9.29~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제115조	
36	건설교통과	소규모용배수로 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413	2023.1.1~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제115조	
37	건설교통과	수리시설 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50	2023.1.1~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제115조	
38	건설교통과	농업용 권정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285	2023.1.1~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제115조	
39	건설교통과	기계화경작로 확보장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472	2023.1.1~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제115조	
40	건설교통과	농어업기반정비(대구확경지정리)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450	2023.4.3~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제115조	

41	도시건축과	주거급여사업-수선유지급여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800	2023.1.1.~ 2023.12.31.	수의 계약	주거급여법 제8조	
42	안전관리과	배수문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41.38	2023.01.~ 2023.12.	수의	지방자치법 117조, 지방재정법 17조	
43	수도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한국수자원공사	27,450	2018.01.01.~ 2023.08.23.	수의 계약	수도법 제23조	
44	수도과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한국농어촌공사	650	2023.02.17.~ 2023.12.31.	수의 계약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45	수도과	예산-당진 공업용수도 운영관리 위 수탁	한국수자원공사	323 (11,840)	2017.01.01.~ 2036.12.31.	수의 계약	수도법 제23조	협약서 (20년간)
46	수도과	황계신대지구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10,118	2021.08.~ 2023.08.	수의 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47	수도과	임침원평지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12,543	2022.07.~ 2024.06.	수의 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48	수도과	예산을 1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47,820	2018.06.~ 2023.07.	수의 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49	수도과	예산을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47,294	2019.06.~ 2023.06.	수의 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0	수도과	예산을 3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23,186	2020.12.~ 2025.06.	수의 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1	수도과	평촌,노회지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15,347	2017.07.~ 2025.06.	수의 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2	수도과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한국환경공단	19,804	2018.06.~ 2025.12.	수의 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3	수도과	하포,용동지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11,634	2019.08.~ 2025.06.	수의 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4	수도과	내포신도시주변지역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14,124	2019.07.~ 2025.06.	수의 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합계				288,533.38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4. 대 행 예 산

예산군의 2023년도 대 행 예산은 대 행사업 건수 3건 45억 108만원이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에 대행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¹⁸⁾에 따라 (주)세움환경에 대행시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18)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표 3-13> 예산군 대행 예산

(단위: 천 원)

연번	부서	대행사무명	대행자	근거규정	예산액
1	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	(주)세움환경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654,086
2	환경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위탁관리	(주)에코비트위터, 금강엔지니어링(주), 부경엔지니어링(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2,547,000
3	환경과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주)제일환경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300,000
합계					4,501,086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제4절 유사 자치단체 위탁예산 비교

1. 유사 자치단체 사무위탁 예산 현황

시·군·구 등 행정단위별 평가 대신 인구 및 재정 여건 등이 유사한 유형별 평가를 통해 자치단체 간 보다 정확한 상호비교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분류 결과¹⁹⁾를 참조하여 비교하였다.

지방재정분석 유형분류 결과를 보면, 예산군은 군(82개) 중에서 I 유형(21개)에 속한다. I 유형 중에서 특히, 재정 여건이 비슷한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경남 거창군 총 8개 군의 2023년 세출예산 본예산 기준 사무위탁 예산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2023년도 세출예산 대비 사무위탁 예산을 보면, 인천 강화군 13.81%, 충남 예산군 12.72%, 충남 홍성군 9.54%, 전북 완주군 8.81%, 경남 거창군 7.14%이다. 충남 예산군은 비교 대상 군 중에서 두 번째로 사무위탁 예산 비중이 높다. 특이한 것은 부산 기장군은 민간위탁사업비가 없다.

19) 자치단체 재정수요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인구여건과 재정여건 변수들로 구성

<표 3-14> 유사 자치단체 간 사무위탁 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세출 예산액(A)	민간 위탁금	민간위탁 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위탁예산 합계(B)	B/A
부산 기장군	816,481	36,098	-	10,847	3,763	50,708	6.21
인천 강화군	639,417	34,802	2,802	14,518	36,222	88,344	13.81
경기 가평군	539,906	20,071	287	3,283	4,547	28,188	3.36
충남 예산군	732,893	15,830	7,034	15,646	54,714	93,224	12.72
충남 홍성군	781,547	40,363	5,285	17,825	11,121	74,594	9.54
전북 완주군	818,696	26,468	3,538	21,810	20,389	72,205	8.81
전남 화순군	705,575	17,537	2,814	5,881	3,257	29,489	4.17
경남 거창군	742,184	19,989	11,326	12,486	9,242	53,043	7.14

<자료> 2023년도 본예산 기준(일반회계+특별회계),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서

2. 유사 자치단체 민간위탁예산 비율 증감률 현황

민간위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탁금 중에 민간위탁예산 비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위탁 예산 비율 증감률의 대상회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이다. 민간위탁예산 증감률의 의미는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예산으로 지출하는 경비의 절감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년도 민간위탁예산 비율 대비 증감률을 측정한다.

산식은 $\{(\text{민간위탁예산비율} - \text{전년도 민간위탁예산비율}) / \text{전년도 민간위탁예산비율}\} \times 100\%$ 이다. 지표의 성격은 하향지표로 세출결산 대비 민간위탁예산비율이 전년도보다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시·군·구 유형(그룹) 중에서 I 유형에 속하는 21개 군 중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경남 거창군의 민간위탁예산비율 증감률을 비교해 보면, <표 3-15>와 같다.

예산군의 민간위탁예산비율 증감률은 2021년 14.60%로 2020년도 - 13.1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형평균 - 2.1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민간위탁예산비율 증감률의 단순 비교는 커다란 의미는 없지만, 위탁예산과 비교해 보면, 예산군은 민간위탁예산 비율이 12.72%로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3-15> 유사 자치단체 간 민간위탁예산 비율 증감률

(단위: %)

I 유형	2019년	2020년	2021년	유형평균	전국평균
부산 기장군	16.38	-5.73	8.08	-2.12	-17.59
인천 강화군	3.31	7.87	1.49	-2.12	-17.59
경기 가평군	26.43	-28.61	2.92	-2.12	-17.59
충남 예산군	-5.52	-13.15	14.60	-2.12	-17.59
충남 홍성군	-2.79	11.65	2.39	-2.12	-17.59
전북 완주군	-3.39	-12.55	-22.19	-2.12	-17.59
전남 화순군	-6.92	2.73	3.83	-2.12	-17.59
경남 거창군	-18.80	31.99	-31.04	-2.12	-17.59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 재구성

제5절 민간위탁 운영 현황

1. 민간위탁 위탁기간

2023년 기준으로 예산군 민간위탁 기간 현황을 보면, 1년 이상~3년 미만 10건(31.26%), 3년 이상~5년 미만 11건(34.37%), 5년 이상~10년 미만 11건(34.37%)이며, 10년 이상은 없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²⁰⁾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²¹⁾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탁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0)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위탁기간) 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1)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 7. (생략)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표 3-16> 예산군 민간위탁 기간 현황

구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사업 건수	10	11	11	-	-	-	32
비율 (%)	31.26	34.37	34.37	-	-	-	100

<자료> 예산군 내부자료

2. 민간위탁기관 모집방법

예산군은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①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②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③ 그 밖에 해당 사무의 관계 법령에서 공개모집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는 자격제한이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²²⁾

예산군의 2023년도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37건 중 공개모집 17건(45.95%), 자격제한 또는 수의계약 20건(54.05%)이다.

수의계약은 비영리법인 등 단체 14개(70%), 일반기업체 6개(30%)로 대부분이 비영리법인 등 단체와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

<표 3-17> 예산군 민간위탁기간 모집방법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사무명	수탁기관	위탁액	위탁기간	선정 방법	위탁근거	비고
1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충남예산지역 자활센터	1,416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2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중 합복지관	(사)예산군 장애인 연 합회	1,600	2022.1.1.~ 2026.12.31.	수의계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3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보 호작업장	(사)예산기독교 연합복지재단	493	2022.5.1.~ 2026.12.31.	수의계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4	문화관광과	예산 황새 공 원 황새 사육·연구	한국교원대산학 협력단 황새생태 연구 원	272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22) 제11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무의 전문성·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 도입이 어려운 경우
2.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로서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사무의 관계법령에서 공개모집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 하여야 한다.

5	문화관광과	전국황새모니터링사업	한국교원대산학협력단 황새생태 연구원	120	2023.1.1.~2023.12.31.	수계약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조례 제12조	
6	문화관광과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예산문화원	-	2020.2.9.~2025.2.8.	수계약	작은영화관운영관리조례 제8조1항	재계약
7	교육체육과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216	2023.1.1.~2024.12.31.	수계약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	재계약
8	경제과	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위탁	(주)에코비트워터 (주)두현이앤씨	1,837	2021.1.1.~2023.12.31.	수계약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재계약
9	경제과	농공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위탁	금강엔지니어링(주)	1,230	2021.1.1.~2023.12.31.	수계약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재계약
10	환경과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주)제일환경	1,300	2023.1.1.~2023.12.31.	수계약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1	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주)세움환경	1,057	2023.1.1.~2024.12.31.	자격제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2	농정유통과	예산농산물 유통센터 민간위탁	예산농능공업협동조합	-	2020.10.1~2023.9.30.	수계약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기본조례 제4조, 예산군 권역별 거점 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13	축산과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예산축산업협 동 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315	2023.1.1.~2023.12.31.	수계약	충청남도 축·산사업시행지침	
14	축산과	충남한우명품화 지원	예산축산업협 동 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127	2023.1.1.~2023.12.31.	수계약	충청남도 축·산사업시행지침	
15	축산과	한우핵군우농가 육성	예산축산업협 동 조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90	2023.1.1.~2023.12.31.	수계약	충청남도 축·산사업시행지침	
16	산림녹지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예산군산림조합	4,278	2023.2.22~2023.12.31.	수계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7	산림녹지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예산군산림조합	4,278	2023.2.22~2023.12.31.	수계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18	수도과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주)에코비트워터 외 2개사	3,711	2021.01.01.~2023.12.31	자격제한 입찰	하수도법제19조2,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	
19	수도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주)두현이앤씨 외 1개사	2,363	2022.01.01.~2024.12.31	자격제한 입찰	하수도법제19조2,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	
20	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분석위탁 운영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67,904	2023.3.1.~2023.12.31.	재계약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재계약

3.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예산군의 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2019년 5건(신규 4건, 재위탁 1건), 2020년 2건(재위탁 1건, 재계약 1건), 2021년 4건(재위탁 4건), 2022년 6건(신규 3건, 재위탁 2건, 재계약 1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여기에서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²³⁾ 재계약의 경우에는

23) 제17조(재계약) ①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표 3-18> 예산군 민간위탁 심의결과

연도	신규(건)	재위탁(건)	재계약(건)	합계(건)
2019	4	1	-	5
2020	-	1	1	2
2021	-	4	-	4
2022	3	2	1	6
합계	7(41.18%)	8(47.06)	2(11.76%)	17(100%)

4.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예산군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는 지역사회가 행복해지기 위한 민관협업 사무 구축이다. 민·관 협업사무 유형인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민·관 협업형 공공서비스가 공익적 가치를 살리면서 주민 감동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다. 예산지출 대비 최적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성과평가 결과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5개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예산군노인요양원 운영 64점,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 C등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급, 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신암 D등급으로 3개 수탁기관만 보통 이하이고, 나머지 12개 수탁기관은 우수하거나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예산군의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에 분포하고 있다. 성과평가자가 피(被)평가자의 실제 업적이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평가자들이 피평가자와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점수를 후하게 주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표 3-19> 예산군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연 번	사무명	유형 시설+사무, 시설, 사무	수탁기관	평가 점수
1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 사무+시설	최진화	89.33
2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1. 사무+시설	(사)예산군장애인연합회	89.6
3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1. 사무+시설	(사)예산기독교연합복지재단	85.83
4	예산군노인요양원운영	1. 사무+시설	사회복지법인 희망송산	64
5	예산공립어린이집	1. 사무+시설	이희섭(개인)	95
6	예산군온종일초등돌봄센터	2. 사무	은혜도서관(성연수)	92.8
7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2. 사무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94.6
8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 시설	(주)에코비트워터, (주)두현이앤씨	22년: 예산C 예당B
9	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3. 시설	(주)금강엔지니어링	22년: 주교A 관작B 신암D
10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1. 사무+시설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	2022년: 26.1
11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1. 사무+시설	사단법인 예산군행복마을네트워크	탁월
12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 사무+시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91.8
13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1. 사무+시설	(주)에코비트워터 외 2개사	2022: 86.4점
14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1. 사무+시설	(주)두현이앤씨 외 1개사	2022: 92.2점
15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1. 사무+시설	(주)내포보부상촌	73.39

5.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기준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업무의 비용절감이다. 민간위

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료 산정기준이 필요하다. 위탁료 산정기준을 보면, 32건 중에서 법령 7건, 중앙정부 지침 7건, 기타 7건, 용역보고서 6건이다.

위탁료는 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을 말한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위탁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²⁴⁾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위탁료 산정기준으로 기타가 7건(21.87%)에 이르고 있다.

<표 3-20> 민간위탁 위탁료 산정기준

구분	법/시행령/규칙	중앙정부지침	조례규칙	용역보고서	내부지침	내부결재	기타	합계
건수	7	7	3	6	-	2	7	32
비율(%)	21.87	21.87	9.38	18.75	-	6.26	21.87	100

6. 민간위탁 관리·감독 근거 및 실적

가. 민간위탁 관리·감독 근거

24)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성질 등이 특수하여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3.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이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예산군에서 민간위탁 관리·감독 근거로는 조례/규칙 17건(53.12%)으로 가장 많고 법령 7건(25.0%), 위탁계약서 4건(12.5%)이다.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탁사무는 위탁계약서에도 위탁사무와 관련한 위탁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위탁업무 전반에 대해) 특정 시기를 사전에 지정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3-21> 예산군 민간위탁 관리·감독 근거

구분	법/시행령/규칙	상급기관 규정	조례 규칙	내부지침	위탁 계약서	기타	합계
건수	8	3	17	-	4	-	32
비율(%)	25.0	9.38	53.12	-	12.5	-	100

나. 민간위탁 관리·감독 실적

예산군의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관리·감독 실적을 보면 32개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였다. 관리·감독 내용은 정산검사, 안전점검, 회계감사,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6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표 3-22> 예산군 민간위탁 관리·감독 실적

연번	부서	위탁사무	협약서, 지침, 사무편람 등 이행 여부
1	총무과	예산군자원봉사센터	2회
2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수시점검

2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관리·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3		자활근로사업	1회(2023.3월)
4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2020 : 정산검사 실시(특이사항 없음) 2021:정산검사실시(주의2) 2022:정산검사실시(주의2)
5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2020 : 정산검사 실시(주의 1) 2021:정산검사실시(주의3) 2022:정산검사실시(주의1)
6	가족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사업	연1회(하반기 실시예정)
7		예산군노인요양원운영	연1회(하반기 실시예정)
8		예산군시니어클럽운영	없음
9		예산공립어린이집	1회(2023년 하절기 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10		국공립대방엘리움어린이집	1회(2023년 하절기 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11	문화관광과	국공립이지더원2차어린이집	1회(2023년 하절기 어린이집 정기 안전점검)
12		예산군온종일초등돌봄센터	1회(2023년 하절기 다함께돌봄센터 정기 안전점검)
13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국가보조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으로 수시점검
14		전국 황새모니터링 및 단계적 방사장 지원	국가보조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으로 수시점검
15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매해 회계감사 실시
16	교육체육과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22년 7차례 점검(현지시정 2건)
17	경제과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년:전기설 작업 중 표지판설치 외 3건 조치완료 21년:폐수처리장정문cctv수선외4건조치완료 22년:밀폐공간작업용보호구구입외3건조치완료
18		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년:방류유량계 검교정 외 3건 조치완료 21년:감속기모터수리외2건조치완료 22년:유입구pH알람경보장치설치외3건조치완료
19	환경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민간위탁	23년 10~11월 중 실시예정
20		맑은누리센터시설 위탁관리	23년 10~11월 중 실시예정
2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23년 10~11월 중 실시예정
22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23년 10~11월 중 실시예정
23	농정유통과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24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센터 운영 및 사업추진현황 점검 민간위탁사무감사 정산검사등
25	축산과	한우광역브랜드육성	
26		충남한우명품화지원	
27		한우해군우농가육성	
28	산림복지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수시(사업별 사업준공 시)
29	도시건축과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0년 1회, 21년1회 22년2회, 23년2회(예정)
30	수도과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22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자체감사 21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자체감사 20예산군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자체감사
31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22내포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자체감사 21내포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자체감사 20내포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용역자체감사
32	관광시설사업소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2022년 4회, 2023년 3회

7.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처분요구

예산군의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8.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예산군의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 현장에서 주의/시정조치를 하였고, 수도과의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상의 미비 사항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부천시의 민간위탁 감사 사례집²⁶⁾을 보면 조직(채용, 인사, 위원회, 복무, 규정), 재정(예산, 회계, 후원금, 법인전입금, 계약), 재산(시설관리, 물품관리), 행정(민간위탁사무), 기타(일반사무)로 분류하여 감사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표 3-23> 예산군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현황(2020~2022)

연번	부서	위탁사무명	감사결과
1	총무과	예산군자원봉사센터	해당없음
2	총무과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운영	해당없음
3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해당없음
4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	2022. 주의1, 시정1
5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운영	2022. 시정1
6	가족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사업	해당없음
7	가족지원과	예산군노인요양원운영	해당없음
8	가족지원과	예산군시니어클럽운영	해당없음
9	가족지원과	예산공립어린이집	해당없음
10	가족지원과	국공립대방엘리움어린이집	해당없음
11	가족지원과	국공립이지더원2차 어린이집	해당없음
12	가족지원과	예산군온종일초등돌봄센터	해당없음
13	문화관광과	예산황새공원 황새사육·연구	없음
14	문화관광과	전국 황새모니터링 및 단계적 방사장 지원	없음
15	문화관광과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없음
16	교육체육과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원	
17	경제과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해당없음
18	경제과	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해당없음
19	농정유통과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2022년/행정조치/주의2건, 시정1건/차량 운행일지 미비치, 연초 세부 운영계획 미제출, 분기별 거래실적 미제출
20	농정유통과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시정(2건), 주의(3건)
21	축산과	한우광역브랜드육성	
22	축산과	충남한우명품화지원	

26) 경기도 부천시(2020). 민간위탁 감사 사례집, pp. 27~30.

23	축산과	한우핵군우농가육성	
24	산림녹지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해당없음
25	도시건축과	예산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해당없음
26	수도과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영역	2022: 시정:1, 주의2 주의1 o 안전관리 공정 중 안전관리책임자 적정 여부 ⇒ 지정은 되어 있으나 서류 미비로 추후 파일철 보관요청 주의2 o 품질 장외영향평가절차서 미흡 ⇒ 현재 2018년 품질 장외영향 평가 절차서로 올해분으로 보완요청 시정1 o 보완관리공정 중 정보보안담당관 교육 미이수 ⇒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정보보안담당관 교육 이수 요청 2021:시정:4,주의1,권고1 시정1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수질분석항목 중 TOC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유지관리지침서에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 시정2 -방재장비, 비상복구자재 및 안전장비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제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확인 후 보완하기 바람. 시정3 -침사지동 협잡물 반출박스 부식 시정4 -제이용설비 유입/방류밸브 부식 주의1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 담당관의 교육이수 바람. 권고1 -분기1회 이상 부지경 계 및 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복합악취농도를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연1회 이상 유입농도를 측정하여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 바람. 2020:시정:4,주의1 -시정1: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2019년 신규 하수도시설물(역탑, 대천, 신양)에 대하여 하수도정보시스템에 유지관리지침서 등록하기 바람. -시정2: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강우전 준비사항, 강우시처리방안, 강우종료 후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시정3: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보안점검 및 교육이수 등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시정4: 방류구유지관리소홀 -주의1: 20년 1분기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에 각 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27	수도과	내포신도시 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영역	2022: 시정: 3, 주의 4 시정1 o 수선유지비목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 전산으로 보관 중 ⇒ 회계관련 서류철로 묶어서 보관하기 바람 시정2 o 정보보호관리 담당관 21년도분 교육 미이수 ⇒ 매년 1회 필수적으로 교육 후 자료 보관요청 시정3 o 정보보안 체크리스트 미비 ⇒ 체크리스트 서류 보완 후 앞으로 시행해 주기 바람 주의1 o 밀폐공간작업 교육자료와 사진대지 분리하여 보관 중 ⇒ 외부업체 공사 시행 전 밀폐공간작업 교육 내용작성 및 사진대지 통합 문서로 보관요청 주의2 o 안전관리공정중 소방안전관리자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 ⇒ 21년도분 서류 누락하였으니 추후 보완 후 제출 주의3 o 지하측구 배수로 낙엽쌓임으로 막힘 우려 ⇒ 주기적인 배수로 관리 필요 주의4 o 처리장 옥상관리 미흡 ⇒ 옥상 내 자재 정리 및 청소 필요 2021:시정:4,주의2 시정1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수질분석항목중 TOC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유지관리지침서에 내용을 추가하기 바람. 시정2 -방재장비,비상복구자재 및 안전장비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제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확인 후 보완하기 바람. 시정3 -방류구 이끼제거 등주기적인 관리 필요 시정4 -스크류에서 제거된 협잡물 보관함 개선 필요

			주의1 -외부업체공사시 행진밀폐공간작업 안전교육 후 교육내용 작성 및 사진대지를 첨부하기 바람. 주의2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 담당관의 교육이수 바람. 2020:시정:4.주의1 -시정1: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강우전 준비사항, 강우시 처리방안 -시정2: 업무지침 개정에 따라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정보보안점검 및 교육이수등 업무를 수행하기 바람. -시정3: 공공하수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에 각 사항을 포함시키기 바람. -시정4: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입간관 유지관리 소홀 -주의1: 20년 1분기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에 각사항이 포함되어있지 않음.
28	관광시설사업소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운영	

9. 민간위탁 취소 사유

예산군에서는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취소 건수가 1건도 없었다. 민간위탁 취소 사유는 주로 수탁기관 준수사항, 주요 위탁계약 조건, 위탁사무 수행 능력 부족, 수탁기관의 해지요구 등이 될 것이다.

제6절 민간위탁 관련 제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²⁷⁾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²⁸⁾에

- 27)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8)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립이나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을 배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과 행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아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산군에는 이러한 지침 없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민간위탁 수탁기관용 지침

예산군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법인, 단체, 회사, 개인 등 다양하다. 예산군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및 회계·결산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 및 지침(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 등), 위탁계약서에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탁기관용 지침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회계 인사·노무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이러한 지침 없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수탁기관 사무편람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수탁기관을 이용하거나 수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산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제4장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

제1절 예산군의회의 사무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

1.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분석

예산군의회에서 예산군 사무의 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본회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회의록은 제8대 예산군의의회(2018. 7. 1.~2021. 12. 31.)로 한정하였다. 회의록 중 사무위탁, 관리위탁, 민간위탁, 위탁관리, 위탁사업, 위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회의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예산군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통하여 제8대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분하여 검색한 결과 70건(회의 개최 일수를 의미하며, 회의 개최일 몇 명이 발언했는지와는 관계없음)이 검색되었다.

이중 본회의 19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2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으로 나타났다.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13건, ‘주요업무 보고 및 추진실적 보고’ 6건이며, 유의미한 발언 회의체별 회의 개최 일수는 <표 4-1>과 같다.

<표 4-1> 사무위탁 관련 유의미한 발언이 있는 예산군의의회 회의체별 회의 개최 일수(2018. 7. 1.~2021. 12. 31.)

구분	연도	회의록 날짜	회의 횟수	합계
본회의	2018	9/11, 9/12, 9/13	3	19
	2019	1/15, 7/29, 7/30, 11/26, 11/29	5	
	2020	7/22, 7/23, 11/26, 11/27, 11/30, 12/1	6	
	2021	7/20 10/22 11/26 11/29 12/1	5	
의회운영위	2018	-	-	-
	2019	-	-	
	2020	-	-	
	2021	-	-	
행정복지위	2018	7/24	1	5
	2019	10/15, 11/5	2	

	2020	-	-	
	2021	9/7 10/18	2	
산업건설위	2018	9/6, 11/8, 12/6, 12/10	4	13
	2019	3/20, 5/14, 12/3	3	
	2020	9/15, 10/12	2	
	2021	9/7 11/11 11/18 12/8	4	
행정감사 특위	2018	11/27, 11/28, 11/29, 11/30, 12/3, 12/4, 12/5	7	28
	2019	6/12, 6/13, 6/14, 6/17, 6/18, 6/19, 6/20	7	
	2020	6/16, 6/17, 6/18, 6/19, 6/22, 6/23, 6/24	7	
	2021	6/14, 6/15, 6/16, 6/17, 6/18, 6/21, 6/22	7	
예산결산 특위	2018	-	-	5
	2019	3/22, 6/25	2	
	2020	6/12, 6/15	2	
	2021	6/23	1	
합계			70	70

2. 회의록 안의 위탁 용어 존재 형태

예산군의회 회의록 안에 위탁이라는 용어는 상당 부분 상정안건 제명, 보고사항, 검토보고, 심사보고, 질문/질의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예컨대,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온종일 초등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육연구 민간위탁 동의안 등²⁹⁾의 형태이다.

안전 제명 외에도 상당수는 위탁 관련 안전의 내용이나 위탁 사실관계, 예산에 계상된 내용 등을 확인하는 취지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사례이다. 질의한 의원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답변과정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답변한 것은 제외하였다.

29)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 기간으로 만료 되어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기준에 의거 위탁 운영코자 예산군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5년으로 정한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규정에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도로 2016년 8월 3일 의무사항으로 개정 근거로 정하였습니다.

<표 4-2> 예산군의회 위탁 문제에 대한 지적 회의록(사례)

ooo 위원 갈대하고 짚하고 내구연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ooo 글쎄,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는 원형을 보존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해서 짚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ooo 위원 왜 자꾸 이런 걸 묻느냐면 매번 물어보는 게 내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정도 지붕하나 이엉 엮어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갑니까?” 했더니 왜 그러세요? 해서 “얼마정도 들어가요?” 했더니 저거 얼마 들어간다고 짚 몇 덩이하면 되는 건데, 저건 그냥 건성, 지금 잘 아실 테지만 이엉을 사오잖아요? 사오죠? 엮은 것을, 짚을 엮는 게 아니라 사온다니까, 사다가 문화재 담당하는 사람들이 위탁받아서 사다 주면 동네 사람들이 올리고 새끼로 묶는 거거든. 사실은 그 의도는 문화재 보관하는 사람들이 해야 좋다고 해서 하게 돼 있는 건데 이 업자들이 이걸 문화재에서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받아서 이엉을 사와요. 엮은 걸, 사다가 그냥 둘러놓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세 동에 3,200만 원이면 한 동에 1,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데 한 동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200~3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대.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예산군에도 짚공예 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 있어요. 마을마다, 마을에도 있고 대흥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짚공예 덕산에도 있고, 짚공예 하는 사람들이 이 자격이 있어요.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문화재 단체 할 수 있는 입찰조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산군에 사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연구 좀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진짜 잘 아실 테지만 그걸 3,200만 원 주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자격이 안 되더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 예산군민들한테 그 사람들도 짚공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화재 뭐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지, 연구 좀 한번 해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이하 생략)
--

따라서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원의 지적사항, 건의사항, 요구사항, 의견 등과 관련된 유의미한 위탁은 검색된 총 회의록 중 무의미한 민간 위탁을 제외한 총 70건의 회의록으로 집계하였다.

예컨대, 세출예산을 심의하면서 담당과장이 나와 세출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하면서 중간에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내용은 제외하였다.

<표 4-3> 예산군의회 위탁 관련 미흡한 회의록(사례)

위원 000
예. 000 위원입니다.
302쪽에 보시면 중간에 그 우편물봉합기 구입비가 8,000만 원이잖아요?
재무과장 000
예, 예.
위원 000
그게 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000
우리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고지서를 인쇄해서 붙이고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게 노후 돼 가지고 한 12년 지났는데 고장도 갖고 해 가지고 신규로 좀 구입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 000
그리고 308페이지, 구)예산군노인복지관?
재무과장 000
예.
위원 000
거기 사회단체한테 리모델링해서 위탁 주신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000
위탁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직접 시설은 관리하고 각각 칸칸이 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는 겁니다. 유상임대입니다.
위원 000
임대를 주는데 우리가 그,
재무과장 000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 되고요, 저희가.
위원 000
유지관리는 해야 된다.
재무과장 000
예.

3. 유의미한 위탁 관련 발언내용 분석

의원의 발언내용은 위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보다는 민간위탁의 운영 가운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필요사항, 건의사항, 촉구사항, 민원 등 현안사항 등이다. 구체적 사안과 관련된 실제 발언내용은 전체 맥락을 살펴보기 전에는 그 취지를 쉽게 알 수 없고, 분명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으며, 또 위탁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식을 도출하고자 하는 이 연구가 꼭 필요로 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그 취지만을 정리하였다.

의원들의 발언취지는 공기관 등의 자본위탁사업비로 위탁한 사업이 직접

사업을 수행했을 때 공기 차이, 예산이 부족하면 직접 사업집행을 했을 때는 입찰차액 잔액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추경에 계속 예산을 계상시키는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관리위탁, 사무위탁, 시설위탁 등(여러 종류의 위탁) 그 본질에 있어서는 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위탁의 내용에 따라 위탁하는 목적이 사업의 효율성, 수익성, 전문성, 시설의 유지관리 필요성에 의한 경우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행정을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우, 자치단체 사업의 전문적,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그 목적하는 바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위탁제도의 관리방식은 위탁의 유형에 따라 수탁자 선정방식이나 절차, 관리·감독, 평가, 재계약 등에 있어서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의원들의 발언도 경우에 따라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등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수탁자 찾기가 쉽지 않은 복지시설의 위탁에 있어서 수탁자의 적격성보다는 종교적 편향성을 우려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 등은 그 업무의 위탁형태는 사업의 효율성, 수익성, 전문성을 표방하는 위탁이지만 내용은 사무위탁적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인 관리위탁적 관리방식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의미한 의원의 발언내용을 위탁의 종류에 따라 의원이 궁극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석·추정하여 연구 목적에 반영 가능한 주제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무의 민간위탁

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으로써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규율되고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행정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실현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무위탁은 관리위탁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사무만을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군의 자활근로사업, 국공립대방엘리움어린이집 운영,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사무위탁은 특별히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추진상의 효율성이 문제 되지 않는 단순 관리사무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단순 사무를 민간이 담당하도록 위탁함으로써 행정을 간소화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므로 수탁자의 선정기준은 관리위탁의 경우처럼 까다로울 필요가 없고, 단지 성실한 업무수행이 요구되는 형태의 위탁이다.

특히, 이 부분에만 해당되는 발언 내용은 아래 적시한 내용 외에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관리위탁의 경우에 지적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무위탁에도(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수탁자는 적절한 방법으로 선정되는가
- 위탁비용은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는가
- 원가계산내용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수탁자의 관리·감독과 사무실적 평가는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가
- 지역업체에 우선 선정은 고려되었는가
- 문제가 있는 수탁자 선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나. 예산사업의 민간위탁

예산군이 추진하는 예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사업의 추진을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군 사무를 위탁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수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사무위탁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다면 사업의 위탁은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군의 사무가 된 것이나 사무위탁은 예산의 편성과는 관계없이 예산군이 해야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업의 민간위탁은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

업처럼 수익성이 아닌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수탁자 선정은 목적에 맞추어 신축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 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되는 사항이다.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은 공유재산과 관련 사무를 함께 위탁하여 공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을 허용하는 위탁으로써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예산황새사육연구, 작은 영화관 운영 및 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공유재산의 관리위탁은 사업의 효율성, 수익성, 전문성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수익성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의 운용을 통한 높은 수익 창출을 요구받는 관리위탁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수익 창출 규모에 따라 위탁비용 초과분에 대한 이용수익을 자치단체가 징수하기도 하고, 전적으로 전문성을 이유로 하는 관리위탁의 경우는 위탁사업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하기도 한다.

(1) 수익 극대화 및 배분 관련 적정성 여부

- 수익극대화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수익창출을 위한 활동과 관리는 적정한가
- 전문성 측면에서 업체의 선정은 적정한가
- 수익창출을 위한 예산군의 지원은 적정한가
- 수익창출 및 관리에 관한 예산군의 관리·감독은 적정한가
- 유지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가 아닌 개발·활용 중점의 적극적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 수익분배 구조는 적정한가, 위탁료 산정은 적정한가

(2) 위탁사업비의 적정 여부

-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적절하게 계상해 주고 있는가
- 위탁자와 수탁자의 경비 부담은 적정한가
- 위탁사업비는 원가계산을 바탕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이용료 또는 사용료 수입의 책정은 적정한가

(3)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 수탁자는 전문성, 기술성, 책임성 측면에서 적정한 자가 선정되었는가
- 수탁자 선정 절차는 적법하고 적정한가
- 위탁운영 조건은 적정하게 설정하였는가
- 공개입찰, 수의계약 방식의 선정은 적법하고 적정한가
- 수익이 나지 않는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적정한가
- 수탁자의 종교적 편향성 등은 고려하지 않는가
- 재계약의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 마을공동체, 관내거주자 및 관내사업자 등에 대한 배려는 고려되고 있는가
- 문제 있는 특정 수탁자의 계속적인 관리위탁을 방지할 방안은 무엇인가

(4) 수탁자 관리의 적정 여부 관련

-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독(감사)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은 적정하게 평가되고 있는가, 관행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닌가
- 위탁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수시적 관리·감독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 위탁시설의 고용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2절 의정활동 분야별 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

1.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현황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³⁰⁾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의 내용,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민간위탁 예산, 수탁기관 선정방식 등을 (포함한 동의안을) 제출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는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에 관해 계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복지위원회의 회의록(2018. 10. 15.)을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적합하므로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야 되며, 오히려 집행부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격려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표 4-4>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회의록(예시)

ooo 위원
어제 그저께 행감에서도 무척 황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또 3년 <u>교원대학교한테</u>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ooo
1년.
ooo 위원

30)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1년, 주는데 보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타 군에서도 이걸 했으면 하는 게 많이 있죠? 타 군에서도 자꾸 건드리는가 보더라고.

문화관광과장 000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김해에서 그쪽에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00 위원

위탁 줘서 거기에서 하는데 교원대학에서 거기도 주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다른 데 뺏기면 안 된다. 좋은 사업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위탁 어차피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줘야 되는데 위탁 줘가면서도 우리 군에서 선점해 있는 걸 다른 데 뺏기지 않게 철저히 노력 좀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000

예, 알겠습니다.

000 위원

이거 뺏기면 진짜 군민들한테 원성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000

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그쪽에서는 한 3년 정도 기간을 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년씩 위탁 계약을 합니다. 1년씩 하면서 더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하고 황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 3년씩 해 놓으면 또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년 단위로 지금 끝나는 마당이라 다시 또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계약을 하려고, 1년씩 하겠습니다.

000 위원

그런데 이게 황새가 소유권도 우리 거가 아니라면서요. 소유권도 아니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000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000 위원

그거 안 맞아서 진짜 철수 하네 뭐 하네 하면 기반시설로 들어간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돈이잖아요. 액수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면이 우리가 부각을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킨 게 안타까운데 이거 위탁하면서라도 한번 더 신경 좀 많이 써보세요.

문화관광과장 000

예, 열심히 홍보해서 황새하면 예산군이라고 하는 걸 더 부각시키겠습니다.

예산군의회에서 2018년~2021년(4년간) 처리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건수는 28건 모두 재위탁으로 처리하면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 예산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현황

연도	건수	동의건수			
		신규	재위탁	재계약	부결
2018	6	-	6	-	-
2019	6	-	6	-	-
2020	10	-	10	-	-
2021	6	-	6	-	-
합계	28	-	28	-	-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면, 예산군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전문성 강화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봉사단체와의 협력체계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관리 운영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표 4-6>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본 동의안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원봉사 운영 관련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이 자원봉사 수요에 즉각적·탄력적 대응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결과

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감사결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

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행정의 문제를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산군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감사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 등 8명으로 편성하였다.

<표 4-7> 예산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 편성

구분	감사위원(10)	사무보조(8)	비고
위원장	정 완 진	● 전문위원 박우현 ● 전문위원 이춘근 ● 전문위원 양필모 ● 의사팀장 김호연 ● 의 사 팀 박찬동 ● 의 사 팀 김은비 ● 의 사 팀 유수진 ● 의 사 팀 김도영	
부위원장	김 만 겹		
위원	강 선 구		
	김 봉 현		
	김 태 금		
	박 응 수		
	이 상 우		
	임 애 민		
	전 용 구		
	홍 원 표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행정복지국 6개 과, 산업건설국 8개 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와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는 <표 4-8>과 같다.

<표 4-8> 예산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및 장소

일시	감사일정	장소	비고
6.14.(월) 10:00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증인선서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문화강좌실	보고 및질의·답변, 문서 또는 현지 확인
6.15.(화) 10:00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문화강좌실	"
6.16.(수) 10:00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문화강좌실	"
6.17.(목) 10:00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문화강좌실	"
6.18.(금) 10:00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수도과	문화강좌실	"
6.19.(토)	자 료 검 토		
6.20.(일)	자 료 검 토		
6.21.(월) 10:00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문화강좌실	"
6.22.(화) 10:00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	문화강좌실	"

제8대 예산군의회에서 4회(2018~2021년)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회의록 검색 건수는 28건이며, 이 중 민간위탁과 관련된 유의미한 감사도 28건이다.

<표 4-9> 예산군의회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감사시 유의미한 건수

구분	유의미한 건수	비고
2018	7	유의미한 건수는 감사 날짜를 의미함
2019	7	
2020	7	
2021	7	
합계	28	

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의 의견을 수렴(종합)하여 직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안을 작성한 후 상정하여 의결을 받는다. 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

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기도 한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의 표현이 상이할 수밖에 없다.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은 구어체로 질의/답변 형태로 기록을 하고, 감사결과보고서는 문어체로 정리하여 작성하기 때문이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실제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의 감사 취지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실제 감사와는 다르게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된다면 감사 취지가 왜곡되고, “감사 따로 감사결과보고서 따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 제8대 의회 기간 중 위탁과 관련된 감사내용

예산군의회 제8대 의회 기간 중 위탁과 관련된 감사내용은 총 20건으로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6건, 2021년 4건이다.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 유의미한 건수 28건과 실제 감사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회의록에는 나타났지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감사결과보고서에는 6건의 감사내용이 있었다. 민간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낭비요인, 민간위탁기관의 통합운영, 민간위탁비의 산출근거, 위수탁계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표 4-10> 예산군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예시)

감사 항목	감사 내용	조치사항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사무내역 및 부서별 배치현황 (최근 5년간)	○ 민간위탁을 위한 또는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행정은 군에서 하고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인력·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요인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처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 및 추후 운영 계획 (최근 3년간)	○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학교급식센터를 개별적으로 민간위탁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적 면에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
예산편성 운영관련	○ 민간위탁사업에 있어 용역수행에 따른 정확한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인건비 집행에 있어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 업체의 부당이득편취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처리
의회 의안제출, 처리현황 및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 (최근 3년간)	○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동의를 받고 각종 위원회 및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은 기획담당관에서 처리결과를 취합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시정
예산시장·역전시장 관리 위탁 및 보조금 지원현황 (최근 3년간)	○ 국밥집에 대한 임대료 현실화와 시장질서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 시장관리는 상인회 위·수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여 상인에게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할 경우 거버넌스 체계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소통의 부재로 실패사례가 있다고 하니 효율적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관계법규와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담조직을 갖추어 직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처리

예산군의회 2019년 감사결과보고서에는 4건의 감사내용이 있었다. 예산군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군에서 직영방식과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과 화장실 운영권을 법제한도 내에서 지역 내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 시설공단 등 설치 또는 직접 고용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행정예산 절감 및 관련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 바란다는 등의 감사가 있었다.

<표 4-11> 예산군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예시)

감사 항목	감사 내용	조치사항
최근 5년간 부서별 민간위탁 사업비 운영 현황	○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군 직영 방식과 민간위탁 운영 방식의 유불리를 면밀히 비교·분석하는 등 운영 방법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기 바람. ○ 황새공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육기술 확보 등을 위해 전문 연구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람.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고, 종사자의 고용승계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키우기좋은 예산 건설에 기여해 주기 바람. ○ 시설공단 등 설치 또는 직접 고용을 통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불비하게 발생하는 행정예산 절감 및 관련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 바람	시정
군유 행정·일반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위탁관리) 운영 현황	○ 활용도가 떨어지고 불필요한 잔여토지를 꼭 필요로 하는 실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주기 바람. ○ 예산시네마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배분의 구조적 문제 등 행정처리 절차를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자료 제출 시 재산의 점용·사용(위탁)료 산정기준을 정확히 표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처리
예당호 출렁다리 개통 후 공무원 차출 현황	○ 공무원 차출로 인해 발생된 민원증가와 민원처리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위탁관리 용역을 완료하고 시행해 주기 바람.	처리
예당호 출렁다리 준공 및 운영관련 현황	○ 화장실 운영권을 법적 한도 내에서 지역내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기 바람.	시정

예산군의회 2020년 감사결과보고서에는 6건의 감사내용이 있었다. 민간위탁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건 아닌지, 역전 전통시장 상가 위탁관리 현황 및 위탁 만료 대비 추진계획, 농공단지 공공 폐수 위탁사업비위탁사업비 지급 시 고정비와 변동비 등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표 4-12> 예산군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예시)

감사 항목	감사 내용	조치사항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재산), 일반 재산 관리 현황표	○ 민간위탁단체에 수탁한 물품 및 재산 전수조사 및 현행화	시정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현황 및 인건비 내역	○ 민간위탁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건 아닌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
최근 3년간 현수막 철거 민간위탁 현황	○ 게시 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광고물 시안에 대하여 규칙 등을 제정하여 구체적 기준 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 과도한 광고물 시안 검토 지양하기 바람.	처리
역전 전통시장 상가 위탁관리 현황 및 위탁 만료 대비 추진계획	○ 역전시장 위탁관리 만료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기존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으로 협의하여 향후 사용계획을 조기에 마련하여 역전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건의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 위탁사업비 지급 현황	○ 위탁사업비 지급 시 고정비와 변동비를 꼼꼼하게 따져 지출하기 바람	건의
최근 3년간 민간위탁 사업비 현황 및 인건비 내역	○ 민간위탁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예산 절감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건 아닌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건의

예산군의회 2021년 감사결과보고서에는 4건의 감사내용이 있었다. 주소로 되어 있는 건물은 신주소로 변경하기 바라며, 민간위탁 단체에 수탁한 차량 및 재산에 대하여 등재하고, 신규등록·관리부서 이관 등 재산관리, 관리위탁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부서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는 등에 대한 감사와 맑은누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등의 감사가 있었다.

<표 4-13> 예산군의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예시)

감사 항목	감사 내용	조치사항
일반 및 행정재산 관리 현황표	○ 구주소로 되어있는 건물은 신주소로 변경하기 바람, 민간위탁 단체에 수탁한 차량 및 재산에 대하여 등재하고, 신규등록·관리부서 이관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관리위탁 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부서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는 등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처리
최근 3년간 부서별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현황	○ 동일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기 바람. ○ 청사 관리 용역체결 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예산군 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치지 말고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위탁 주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람. ○ 예산시네마 운영 사업은 단순한 시설 관리 위탁이 아닌 운영 업무의 위탁이므로 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추진하기 바람.	시정
최근 3년간 맑은누리센터 민간위탁 현황(계약서 첨부)	○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나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며, 소각시설의 경우 제대로 운영이 안돼 잔여량 소각을 위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니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시정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현황, 지원예산 및 계약 세부내역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축분뇨 처리비용)가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처리비용 현실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시정

3. 예산안 심사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지적사항(상임위, 예결위)

지방의회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을 가진다. 예산안 심의·확정권은 조례입법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의회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 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³¹⁾

31)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 등 안전심사 시 민간위탁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던 회의(본회의/상임위/결정특위)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한 회의 일수는 총 42일이며, 본회의 19회, 행정복지위원회 5회, 산업건설위원회 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회이다.

산업건설위원회가 회의 일수가 많은 이유는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와 위탁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예산군의회의 위탁 관련 유의미한 발언이 있었던 회의 횟수

구분	회의 일수	비고
본회의	19	횟수는 회의 중 유의미한 발언을 한 회의 날짜를 의미하며, 의원별 발언 횟수와는 관계없음.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5	
산업건설위원회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	
합계	42	

가. 위탁금 세입 예산

세입예산에서 위탁금 수입은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이다. 위탁비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307-05(민간위탁금), 308-11(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2-03(민간위탁사업비), 403-02(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으로 예산에 계상된다.

예산군의회의 본회의 회의록 19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이자수입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위탁비는 위탁사업이 종료되면 정산에 따른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
-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표 4-15>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

216 이 자 수 입	설 정
216-03 기타 이자수입	1.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 2. 지방보조금 등(위탁비 포함)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 ※ 위탁비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상 307-05(민간위탁금), 308-11(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2-03(민간위탁사업비), 403-02(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비)에 따른 비용(이하 같음)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자는 사업비 및 수입금에 대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회계연도별로 발생이자 및 부수수입을 포함한 정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비와 수입금 잔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표 4-16> 위탁 계약서(예시)

○ 위탁 계약서 제12조(운영비 정산 및 반환) ①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위탁자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세입예산 심사 시 위탁비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 기타이자수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된다.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세수추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세입추계 방법·근거, 전년도 세입 예·결산간, 세목별 차이분석 등 명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균의회에서는 세입예산 심사 시 위탁비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

나. 위탁금 세출예산

위탁금 세출예산은 민간위탁금,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종류가 있다.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등이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자본적) 위탁사업비는 광역사업 등 해당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경상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이다.

<표 4-17> 사무위탁 관련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300	307 민간이전	05. 민간위탁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 시가지·도로 청소대행사업비 등 ※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300	308 자치단체등 이전	11.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제외)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 경비 ※ (예시)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제반경비
	402 민간자본 이전	03. 민간위탁사업비
		1.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타에 지급하는 교부금 ※ 1~2호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구분	편성목	설정(통계목포함)
		경비에 한함
400	403 자치단체 등자본 이전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 광역사업 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을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경비 -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편성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2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 대행 포함(자본형성적 사업 경비에 한함) 2.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제반 경비 ※ (예시) 「역사문화권정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경상적 경비 외의 제반경비

예산군의회의 본회의 회의록 19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회의록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대부분의 발언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운영에 관한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위탁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발언 취지도 대부분 세출예산 심사와는 관계없이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질의였다.

예컨대, 2019. 6. 25.(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50회 제1차)에서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내용을 보면 <표 4-18>과 같다.

<표 4-18> 예산군의회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000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비해서 공기관 자본위탁 했잖아요? 부속서류요. 거기에 보면 4억 2,000만 원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보조사업비에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해서 7억 9,400만 원을 세워서 지출액이 3억 7,400만 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4,200만 원이에요. 아니, 4억 2000이예요. 4억 2,000. 이거 한발대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목이나 이런 거 세울 때 급하다고 해서 성립전을 세우고 딱 예비비 사용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이거 가뭄 뭐 이런 거 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을 하든 아니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 데, 계속비이월도 아니고 굳이 왜 명시이월이 됐냐는 거죠. 굳이, 예산편성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항상 농정유통과나 와서 긴급하다고 하고 예비비 쓰고 이럴 정도인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결산 봐주신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발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하잖아요? 해마다 다가오는 가뭄 대비라든

지 그래서 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용수 확보를 한다든가 하는 거면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 되냐는 거죠. 차라리 계속이월이면 몰라도, 왜 명시이월이 됐냐는 거죠.

질의·답변내용

4. 결산 심사에서 위탁사무에 대한 지적사항(상임위, 예결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³²⁾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균의회 기본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³³⁾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1일에 집회하며,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결산승인제도는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

32)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6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7조(회의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의한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체의 장의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 결과를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사후통제와 사후감시의 역할을 행함과 동시에 결산을 승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해소시켜 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런데 회의록을 통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결산심사 시 논의된 발언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5. 군정질문(5분자유발언 포함) 시 위탁사무 관련 지적사항

지방의회에서 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이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1항³⁴⁾에서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의 전반 또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분자유발언(7분/20분 자유발언)은 지방의회에 따라서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원 1인당 5분 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5분자유발언”을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7분 또는 10분자유발언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제1항³⁵⁾에서도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5분 이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주요 군정 및 그 밖에 중요한

34) 제66조의2(군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군정 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이하 “군정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군정질문은 모두질문과 보충질문을 병행하되, 모두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이 경우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모두질문의 시간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보충질문의 시간에는 그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보충질문 시 주된 질문자가 우선하며, 다른 의원은 1회에 한정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⑤ 질문자의 수 및 질문순서는 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군정질문 2일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

35)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회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주요군정 및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회일 전일 18시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다.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대 의회 본회의 중 군정질문 13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6건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유의미한 발언 회의 일수는 19회 있었다.

<표 4-19> 예산군의회 제8대 본회의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유의미한 발언 횟수

구분	유의미한 발언 회의일수
군정질문	13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6
합 계	19

제8대 의회 본회의에서 군정질문 중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일문일답을 보면 <표 4-20>과 같다.

<표 4-20> 예산군의회 군정질문 중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일문일답(예시)

ooo 의원 이 사업 부서가 달라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기 보다 그 숲속의 집을 봉수산 휴양림을 잘 시설해 놓고 썰매장까지 만들어 놔는데 거기다가 그 썰매장을 이용을 해야지 다시 윤봉길체육관에다가 <u>위탁</u>을 줘 가지고 돈을 들여가며 그걸 굳이 해야 되나? 관광시설사업소장 ooo 그 고민 가지고 여러 번 현장을 살펴봤어요. 직원들이라든지 전문가 되신 분들을 모시고 했는데 눈이 안 온다면 실상 그건 어렵다. ooo 의원 지금 눈이 안 오는데 제설기를 구입하는 것도 윤봉길체육관에다가 시설하는 1억 원만 가져도 제설기 충분히 구입할 수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ooo 글쎄 그건 접근력이 그간 이용률을 살펴보면. ooo 의원 그러면 시설 자체 할 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ooo 그 당시에는 눈이 내렸고 하기 때문에 간이식으로 했었는데요. 지금은 현대화되다 보니까 출렁다리에 맞춰서 모든 그런 인파나 모든 것을. ooo 의원 지금 예산군에 겨울철 스포츠가 없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ooo
--

예.

ooo 의원

그런데 거기에 시설이 잘되어 있고 또 휴양림의 겨울에 놀러 오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썰매장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지금 폐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며는,

관광시설사업소장 ooo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 드렸듯이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을 해서 파크골프라든지 가족 피크닉장이라든지 다목적 기능을 살려 가지고 눈이 내렸다 하면 자연스럽게 잔디밭에서 눈썰매를 탈 수 여건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제설장치를 과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ooo 의원

과대한 비용이라기보다 지금 체육관에서 하려고 하는데도 돈이 1억을 투자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제설기 살 수 있잖아요. 임대하다가 해도 되고, 그러니까 고려해 보시라고 해는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시설할 때는 해 놓고 지금 와서 눈이 안 온다고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행정을 앞으로 자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ooo

고민하고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7월 30일(화) 제6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이 있었다. 제8대 의회 중에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5분자유발언은 1회 있었다. 그 발언내용을 보면 <표 4-21>과 같다.

<표 4-21> 예산군의회 본회의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5분자유발언 내용

ooo 의원

공공부분 민간위탁 운영을 공기업 형태로 전환 시 얻게 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세수 확보와 안정된 일자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유치와 시설 유지에 드는 혈세는 연간 수십억이 소요되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초 환경시설을 비롯한 민간위탁 시설을 공기업형태의 시설공단으로 전환 시 2018년 기준 운영비 160억 4,800만 원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 지출, 일반경비, 기업이윤,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최대 48억 1,500만 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용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물론 인구정책과 지방 재정자립도 건전성 확보라는 부분에서의 청사진도 예견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안정된 일자리 창출정책 차원의 정규직 전환과 지방재정의 효율적 이용과 혈세 절감 정책 차원의 공기업 형태의 시설공단 설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단계 2차 전환 대상자들은 언제 올지 모르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계약이 만료되는 올 연말을 앞두고 희망 고문을 받고 있습니다.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3단계인 공공부분 민간위탁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도 위탁 또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불안감을 안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공공복지와 기초 환경시설 등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그분들에게 부탁하며 그분들이 원하는 오직 한 가지!

안정된 일자리에 대하여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며 모른 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송강호 주연의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기후변화로 얼어붙은 지구에 남은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말한 열차에 탑승하여 지구를 끊임없이 도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모두가 쫄쫄 얼어붙은 지구를 바라보며 하층계급의 희생으로 달리는 열차만이 인류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열차가 달리기 위해 기관차로 납치되고 기계실에 감금되어 중금속을 퍼내던 그 꼬마아이 앤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조직적으로도 은폐하며 자기들의 위치에서만 판단하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두를 위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설국열차의 절대 권력자 월포드가 되어 이 시간도 어김없이 예산군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와 민간위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노동자가 설국열차 앤디와 같은 희생을 강요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제5장 공공·민간위탁에 대한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제안

제1절 민간위탁 운영실태 개선

1.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개선

예산군의회 제8대 의회 기간 중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를 보면 2019년 5건(신규 4건, 재위탁 1건), 2020년 2건(재위탁 1건, 재계약 1건), 2021년 4건(재위탁 4건), 2022년 6건(신규 3건, 재위탁 2건, 재계약 1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부적정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 중 예산군의회 의원을 군수가 일방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정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적 성격의 조례로, 통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 등 민간위탁 절차, 지휘 감독 등 민간위탁 전반에 걸친 일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산군에서도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정(2003. 11.)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에 따라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 그 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아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나 수탁기관이 상호 협치로 예산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 관리·감독 점검표 작성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³⁶⁾에서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점검표가 필요하다. 예컨대 민간위탁금 관리를 위해서는 입출금 통장 확인,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일일결산 등 기재사항 누락 등 확인 점검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손쉽게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수탁기관 관리·감독 시 민간위탁금 관리, 수입금 관리, 후원금 관리, 제3자 위탁 여부, 지출관리 등 분야별로 점검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한다면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의 능률성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등을

36) 제18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관리·감독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 민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표(예시)

분야	점검항목	점검 내용	확인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비고 (미흡사유)
회 계 관 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 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공개(법령에 공개가 의무사항인 경우)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예산군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예산군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①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 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월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4.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지표 개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³⁷⁾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할 수 있도록

37) 제20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록 하고 있으나 실제 성과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과평가를 수탁기관 유형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성과지표는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무만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과 사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시설형 위탁 등 다양한 형태에 맞게 맞춤형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맞게 맞춤형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5.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제도 개선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고용승계)³⁸⁾에 따르면,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면 그 신분을 보장하되, 해당 사무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위탁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위탁 예산을 줄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 때문이다. 인건비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승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인력이 그대로 승계될 경우에는 대표만 바뀌는 민간위탁이 된다.

일정한 원칙과 기준 없이 기존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면 그 신분을 보장할 경우 인적 구성의 경직성과 사무의 효율성 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경우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은 동일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민간위탁은 예산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

38) 제14조(고용승계) ①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기간 중 특별한 사유로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이 고용했던 직원이 희망하면 그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의 특성, 직원의 귀책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고용승계 시 새로운 수탁기관은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퇴직급여 등의 지급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조성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 없는 고용승계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민간위탁 예산이 증가한다면 재고하여야 한다. 예컨대, ① 위탁사무의 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② 위탁사무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③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④ 공개모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⑤ 필요 인력 감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등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고용승계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6. 위탁자 및 수탁자 전문교육 강화

위탁예산의 건전한 운영으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위탁예산의 부정사용, 목적 외 사용, 위법한 회계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위탁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위탁업무 담당자와 수탁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위탁사무 관리이다. 수탁기관의 예산·회계 관리, 수탁기관의 인사·노무 관리, 위탁 주관부서 유의사항 및 수탁기관의 의무, 지도·점검 및 회계감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교육도 분야별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 분야 맞춤형 교육이 되어야 한다.

7. 민간위탁 만족도 조사

민간위탁 사무 관련 업무 등 수행된 유·무형 서비스에 대해 그 서비스가 완료된 후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비용, 응대시간, 서비스요원의 전문성과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면서 이용자에게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8. 위탁계약서 내용 보완

가. 사무편람 작성 승인

위탁계약서에는 사무편람 작성 승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예산군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군수”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한다. “군수”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군수”의 지도·점검 실시 2주 전까지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군수”의 소속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협약이행의 보증

예산군은 수탁자가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에 관한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수탁자”는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00월 00일까지 “군”이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에 “군”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군”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체결일부터 0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군”은 “수탁자”가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라. 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예산군은 공사 및 용역계약에 대해서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2/100~100/10 범위에서 공종구분에 따라 준공검사 후 공사대가를 최종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납부하고, 해당 공사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한다.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도 하자보수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방은 하자 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증금 중에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자치단체에 귀속조치 한다.

바. 표준위탁계약서 활용

예산군 각 부서에서 위탁계약을 맺을 경우에 부서별로 각자 위탁계약을

맺기 때문에 위탁내용이 각각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위탁계약을 맺을 경우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예산군 차원에서 표준 위탁계약서(안)를 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사무위탁 관련 조례 제·개정

1. 예산군 사무위탁 관련 조례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³⁹⁾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민간단체(기관) 및 개인에게 위탁하는 “민간위탁”과 공공법인 등에게 위탁하는 “공공위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현재 예산군에는 위탁에 관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예산군 민간위탁조례”라 함)를 제정하여 군수에게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의회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에 관한 예산군의회 의 견제와 감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런데 사무의 공공위탁과 대행에 관하여는 대상사무의 기준, 의회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소지가 있고, 의회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예산군 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① 의회의 동의 후 중요사항이 변경되어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없고, ②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가 없고, ③ 위탁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작성하여야 할 사무편람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음.

39)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따라서 의회에서는 공공위탁과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공공위탁과 대행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관리되게 할 필요가 있고, 예산군 민간위탁조례를 보완하여 위탁사무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

2. 사무위탁 관련 조례의 유형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위탁과 관련한 조례 제정 유형을 보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먼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만 제정하고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유형임(제1유형). 이는 행정의 권한이 민간에 위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위탁의 절차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공위탁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하는 유형인데(제2유형), 부산광역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공공위탁과 대행을 하나의 조례로 묶어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위탁의 종류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동일한 내용이 중복 규정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유형임(제3유형). 이는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이 행정사무의 위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임.

<표 5-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 관련 조례제정 유형

구 분	제1유형 (민간위탁 조례만 제정)	제2유형 (민간위탁, 공공위탁 별개 조례 제정)	제3유형 (민간위탁+공공위탁 통합 조례 제정)
1. 규정 내용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각각 다른 조례로 제정하여 규율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을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여 규율

2. 특징(장단점)	○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위탁에 대한 절차가 불투명하고, 지방의회에 의한 공공위탁 견제·감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됨.	○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중복규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를 유지한 채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함에 따라 입법과정 이 보다 수월할 것임.	○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간결한 입법이 될 수 있으나,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와 통합하여 규정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많은 조례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 117조제3항	○ 「지방자치법」 제 117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 117조제2항 및 제 3항
4. 입법례	○ 광역 14개(전라북도, 경상남도 등) ○ 기초 211개(보령시, 예산군, 부천시, 파주시 등)	○ 광역 2(부산광역시, 충청남도)-공공위탁 조례에 “대행” 포함 규정 ○ 기초 3(대구광역시 중구, 홍천군, 구리시)	○ 광역 1(경기도) ○ 기초 5(수원시, 오산시, 천안시, 강진군, 서산시)

3. 예산군 사무위탁 관련 조례 개선 방향

- 예산군 사무위탁 관련 조례를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안이 있음.
- 제1안은 앞의 제2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에 관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이와 별개로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칭)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임.
- 제2안은 앞의 제3유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군 행정사무의 공공위탁·민간위탁 및 대행을 통합하여 (가칭) “예산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임.

가. 민간위탁조례 개정과 공공위탁·대행 조례 제정 방안(제1안)

(1)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개정

(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예산군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의회 동의,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의 중요사항 변경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 근거가 없으며, 위탁기관이 작성해야 할 사무편람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민간위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개정안 입안 내용

① 제2조(정의)

- “민간위탁”의 용어정의에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되는 공공위탁이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제1호).
- 이 조례에서 중요 용어인 “재계약”과 “재위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u>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u>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u>

2. (생략) <u><신설></u> <u><신설></u>	<u>한다)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義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 2. (현행과 같음) 3. <u>“재계약”이란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u> 4. <u>“재위탁”이란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u>
---	---

② 제5조(의회의 동의 등)

- 군수가 민간위탁(재계약 및 재위탁을 포함)하려면 해당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재위탁의 경우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위탁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의 내용 중 ①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 ②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 ③ 사업장의 위치 변경, ④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시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u>민간위탁</u> 하려면 예산	제5조(의회 동의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u>민간위탁(재계약 및</u>

<u>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17조에 따른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u>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u> 10. (생략) <u><신설></u>	<u>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예산균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u>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해당 민간위탁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u>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9. <u>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u> 10.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1. 3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변경</u> <u>2. 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 증감</u> <u>3. 사업장의 위치 변경</u> <u>4. 그 밖에 위탁사무의 중요 내용의 변경 등</u>
--	---

③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위탁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예산균의회 의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⁴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 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u>예산군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②·③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간 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u>위탁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2. (생략) 3. <u>예산군의회 의원</u> 4. ~ 7. (생략) ⑧ <u>위원회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심의 또는 의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u>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3. <u>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u> 4. ~ 7. (현행과 같음) <삭제> ※ 제6조제1항으로 이동
<신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40)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위원회를 설치하는 개별 조례마다 모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를 복잡하게 하여 수법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그런데 예산군에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기본조례가 없음.

따라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하여 개별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기본조례인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이 조례 제8조 및 제9조는 불필요하게 되며, 그 외에도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 회의록의 작성 등은 별도의 규정 없어도 이 조례에 따르게 될 것임.

④ 제13조(계약체결 등)

- 군수가 수탁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5의2.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생 략) 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포함하여야</u> 한다. 1. ~ 5. (생 략) <u><신 설></u> 6. 수탁기관의 <u>의무</u>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7. ~ 11. (생 략) ③·④ (생 략)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생 략) ②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이 포함되어야</u>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u> 6. 수탁기관의 <u>준수사항</u>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7. ~ 11.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사무편람 등

- 제13조제3항제6호에서는 위탁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수탁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7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도록 함(안 제17조의3).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7조의2(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u><신 설></u>	제17조의3(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민

	<u>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해 민간위탁사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u> <u>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처리지침을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u> <u>④ 수탁기관은 제3항의 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	---

⑥ 제18조(관리·감독), 제19조(감사) 및 제20조(성과평가)

- 제18조에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과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법문을 이해하기 복잡함. 따라서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조문(제21조)으로 규정함(안 제18조).
- 제19조에서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및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탁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군수는 감사결과와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19조).
- 제20조제1항에서 군수가 성과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함(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관리·감독)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위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8조(관리·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9조(감사)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u>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19조(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u>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u>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며, <u>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u>
제20조(성과평가)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20조(성과평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u><신 설></u>	제21조(계약의 해제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2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면 미리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시설(장비·물품을 포함한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2)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

(가) 제안이유

- 현재 예산군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의회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공공위탁 및 대행의 대상사무 기준, 의회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규정이 없어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소지가 있고,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관리되게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위탁 및 대행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용어에 대한 정의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군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사전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
-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7조).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위탁·대행기간, 위탁·대행기관과 재계약 및 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목과 책임, 수탁·대행기관의 준수사항, 위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사용수수료등의 징수 및 비용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위탁·대행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편람,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다) 제정안 입안 내용

① 제명, 제1조(목적)부터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까지

- 조례의 제명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과 대행에 포함하는 의미로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함.
-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간결하게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이 조례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제정안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군수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공공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위탁”이란 공공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대행기관과의 공공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

여 공공위탁을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사전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

제정안
제4조(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 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5조(공공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및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군수는 공공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하는 것으로 함(안 제5조제1항).

- o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6조).

제정안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대행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대행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탁·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위탁·대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 군수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해당 공공위탁·대행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공위탁·대행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공공위탁이나 대행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위탁·대행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함(안 제7조제1항).
-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공위탁·대행 사무를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제정안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공공위탁하거나 대행(재계약 및 재위탁을 포함한다)하게 하려면 해당 공공위탁·대행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공위탁·대행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공공위탁이나 대행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위탁·대행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위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위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8.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 위탁·대행의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대행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⑤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등)부터 제11조(계약의 체결 등)까지

- 수탁·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수탁·대행기관의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정안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대행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대행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수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

항

제9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수탁·대행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대행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대행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대행의 목적
2.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대행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수탁·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종사자 등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수탁·대행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위탁·대행

사무명, 위탁·대행기간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위탁·대행기간)부터 제14조(계약취소 등)까지

- 위탁·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군수가 수탁·대행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재계약 시 고려할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정안
제12조(위탁·대행기간) 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대행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재계약) ① 군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위탁·대행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그 밖에 공공위탁·대행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대행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위탁·대행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제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대행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5. 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6. 수탁·대행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대행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면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위탁·대행시설(장비·물품 포함한다)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군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부터 제19조(정산 및 실적보고 등)까지

-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고,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군수에게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5조).
- 수탁·대행기관의 준수사항과 위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게 함(안 제18조).
-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군이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그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제정안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공공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6조(수탁·대행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대행기관은 조례 및 위탁·대행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또는 대행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정산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 또는 대행이 종료된 경우 군이 부담한 위탁·대행비용의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대행비용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⑧ 제20조(사무편람)부터 제22조(감사 등)까지

-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 및 서식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도록 함(안 제20조).
-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함(안 제21조).
- 군수는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감사결과와 수탁·대행기관의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함(안 제22조).

제정안
제20조(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게 위탁·대행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감사 등) 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⑨ 제23조(성과평가)부터 제25조(시행규칙)까지

○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 보고하게 함(안 제23조).

○ 군수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안 제24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

제정안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공공위탁 및 대행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대행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등) ① 군수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제정안 시안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소관부서 간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군수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계약”이란 공공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공공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위탁

기간 연장을 위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위탁”이란 공공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대행기관과의 공공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위탁을 하거나 대행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위탁·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면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대행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대행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탁·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⑩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위탁·대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공공위탁하거나 대행(재계약 및 재위탁을 포함한다)하게 하려면 해당 공공위탁·대행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공위탁·대행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공공위탁이나 대행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위탁·대행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8.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 위탁·대행의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대행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대행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대행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수탁·대행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대행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수탁·대행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

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대행기관 선정에 관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대행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대행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대행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대행의 목적
2.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대행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대행기간
5. 위탁·대행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수탁·대행기관의 준수사항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8. 수탁기관 종사자의 고용승계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9. 이용자, 종사자 등과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탁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수탁·대행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대행기관의 명칭, 위탁·대행사무명, 위탁·대행기간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대행기간) 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

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대행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재계약) ① 군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위탁·대행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그 밖에 공공위탁·대행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대행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대행기관과 위탁·대행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제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대행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대행기관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대행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5. 위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6. 수탁·대행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대행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면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대행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위탁·대행시설(장비·물품 포함한다)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군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공공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

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16조(수탁·대행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대행기관은 조례 및 위탁·대행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또는 대행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7조(비용의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4. 사업의 위탁·대행에 따른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정산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 또는 대행이 종료된 경우 군이 부담한 위탁·대행비용의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대행비용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위탁·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③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게 위탁·대행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감사 등) ① 군수는 위탁·대행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대행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공공위탁 및 대행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대행기관의 위탁·대행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대행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 등) ① 군수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위탁·대행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공공위탁 또는 대행(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포함한다)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공위탁 또는 대행 계약이 체결되어 계속 중에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위탁 또는 대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만료 등으로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공공위탁 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통합 조례 제정(제2안)

-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통합 조례 제정은 예산군 행정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임.
- 현재 예산군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행정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공공위탁과 대행에 관한 조례가 없어 이에 대한 의회의 관리 및 통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모두 통합하여 규정하는 (가칭) “예산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임.
- 이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입법례를 검토한 후 행정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통합 조례안(시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유사입법례 검토

- 사무위탁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광역자치단체 1곳(경기도)과 기초자치단체 4곳(수원시, 오산시, 천안시, 강진군)이 있음.
-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통합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조문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5-3>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통합 조례 조문체계 비교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정) 2000.09.25 조례 제2280호 (일부개정) 2023.03.23 조례 제4388호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1999.10.01 조례 제553호 (전부개정) 2021.12.23 조례 제1952호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정 1999.07.24 조례 제284호 (일부개정) 2021.08.01 조례 제1607호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적용)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		

제5조(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		
	제4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2장 공공위탁	제2장 공공위탁	
제6조(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5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7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공공위탁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제7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	
제11조(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제8조(공공위탁 수탁기관 선정)	
제11조의2(공공위탁 기간 등)		
제12조(공공위탁의 재위탁, 재계약)		
제13조(공공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제10조(공공위탁 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제14조(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	제11조(공공위탁 비용 부담 등)	
제15조(공공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	제12조(공공위탁 사용료 등의 징수)	
제16조(공공위탁의 정산 등)	제13조(공공위탁 정산 및 실적 보고 등)	
제17조(공공위탁의 사무편람)	제14조(공공위탁 사무편람 등)	
제18조(공공위탁의 실적 보고)		
제19조(공공위탁의 지도·감독)	제15조(공공위탁 지도·감독 등)	
제20조(공공위탁의 감사)	제16조(공공위탁 감사)	
제21조(공공위탁의 계약 해지 등)	제17조(공공위탁 계약취소 등)	
제3장 민간위탁	제3장 민간위탁	제2장 위탁 대상사무 선정
제22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18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5조(위탁 대상사무)
제23조(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6조(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24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제19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설치)	
제2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위탁 절차 및 방법 제7조(위탁 계획 수립)
제26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제21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제27조(민간위탁 동의안)		
제28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의 선정)	제22조(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4장 수탁기관 선정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29조(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	제23조(수탁기관적격자 심의위)	제11조(사무위탁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설치)	원회 설치 등)	치)
제3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32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5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33조(위원의 제척 등)	제24조(위원의 제척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15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장 위탁계약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34조(민간위탁의 계약의 체결)	제26조(민간위탁 계약체결 등)	제17조(위탁계약 체결)
	제27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의 공개)	제18조(위탁기간)
제35조의2(독립채산제)		제19조(재계약)
제36조(민간위탁 기간 등)		제20조(위탁계약 해지 등)
		제6장 관리 운영 제2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 시)
		제22조(인계·인수)
제38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의 무)	제30조(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 무)	
	제29조(민간위탁 운영지원)	제23조(운영지원)
제37조(민간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	제31조(민간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	제24조(사용료 징수 등)
제40조(민간위탁의 사무편람)	제32조(민간위탁 사무편람)	제25조(사무편람)
제39조(민간위탁의 지휘·감독)	제33조(민간위탁 지도·감독 등)	제26조(관리·감독)
제41조(민간위탁의 지도·점검 등)		
제42조(민간위탁에 따른 감사)	제34조(민간위탁 사무처리 감 사)	제27조(처리상황의 감사)
제43조(민간위탁의 성과평가 등)	제35조(민간위탁 성과평가)	제28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 가)
제44조(민간위탁의 재위탁, 재계 약)	제28조(민간위탁 재계약 등)	
제45조(민간위탁의 취소 등)	제36조(민간위탁 계약의 취소 등)	
	제37조(민간위탁 수탁기관 응 모 제한)	
제4장 보칙 제46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원시와 오산시의 경우 제1장의 총칙에는 조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규정하고, 제2장에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장에

보칙을 두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반면에, 서산시의 경우 제1장 총칙에서 조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앞의 입법례와 동일하나, 제2장부터는 위탁사무의 내용에 따라 제2장 위탁 대상사무 선정, 제3장 위탁의 절차 및 방법, 제4장 수탁기관 선정, 제5장 위탁계약 및 제6장 관리 운영으로 조례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 입법례를 검토해 볼 때, 수원시와 오산시와 같이 위탁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게 되면 조례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수범자가 조례의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같은 내용이 중복 규정되어 조문이 복잡해 질 수 있음.
- 그런데 서산시의 경우와 같이 업무 성질별로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게 되면 법체계가 간결하게 되지만, 위탁업무의 성질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 이 연구에서 통합 조례안은 그 체계를 수원시나 오산시의 사례와 같이 업무 형태별로 구분하되, 대행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키고, 현행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입안하고자 함.

(2) 예산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안)

(가) 제정이유

- 현재 예산군에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행정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공공위탁과 대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의회의 관리 및 통제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
- 이에 예산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사무의 위탁 및 대행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함으로써 사무위탁과 대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공공위탁을 하려면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선정방법, 이의신청,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공공위탁의 재계약·재위탁 및 계약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위탁사무의 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위탁비용의 부담 및 반납, 사용료등의 징수, 정산 및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사무편람, 관리·감독, 위탁사무 감사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의회 동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공공위탁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7조).
- 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대행의 의회 동의, 대행심의위원회의 설치,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2조).

(다) 조례안 입안 내용

①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및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간결하게 규정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자주 쓰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공공위탁”, “민간위탁”, “대행”, “공공기관”, “수탁기관”, “대행기관”, “재계약” 및 “재위탁”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공공위탁, 민간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제정안
예산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군수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6.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8. “재위탁”이란 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대행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대행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위탁, 민간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5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및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군수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면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
-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제정안
제2장 공공위탁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공공

위탁심의위원회(이하 “공공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위탁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공공위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상당 이상의 관제 공무원

2.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대행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공공위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공공위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공위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⑨ 위원장은 공공위탁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위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위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⁴¹⁾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공위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위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위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회 동의 등), 제8조(수탁기관 선정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계약의 체결 등), 제12조(위탁기간), 제13조(재계약 등) 및 제14조(계약해제 등)

- 군수는 공공위탁을 하려면 해당 공공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공위탁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선정방법, 이의신청, 수탁기관과의 계약체결 및 위탁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공공위탁의 재계약 및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제정안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위탁(재계약과 재위탁을 포함한다) 하려면 해당 공공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공위탁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공공위탁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위탁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41) 예산군에 각종 위원회에 적용될 기본조례인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8.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공공위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위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공공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8.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9.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취소·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1.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공공위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 ① 제11조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재계약 등) ① 군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그 밖에 공공위탁·대행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

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제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5.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6. 수탁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물품 포함한다)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군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16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제17조(비용 부담 등), 제18조(사용료등의 징수) 및 제19조(정산 및 실적보고 등)

-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의 소재와 명의표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
- 수탁기관의 준수사항과 위탁비용의 부담 및 반납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 군수가 부담한

위탁비용의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제정안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공공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정산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 군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비용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 제20조(사무편람 등), 제21조(지도·감독 등), 제22조(감사 등) 및 제23조(성과평가 등)

○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0조).

-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고, 지도·감독 결과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도록 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공공위탁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

제정안
제20조(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

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감사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하고, 군수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미리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

제정안

제3장 민간위탁

제2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⑦ 제25조(의회 동의 등)

- 군수는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수탁기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제정안

제25조(의회 동의 등) ① 군수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계약과 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해당 민간위탁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 위탁·대행의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⑧ 제2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등) 및 제27조(준용)

-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6조).
-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공공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7조).

제정안
제2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민간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민간위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위탁”은 “민간위탁”으로, “공공위탁위원회”는 “민간위탁위원회”로 본다. 제27조(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위탁”은 “민간위탁”으로 본다.

⑨ 제28조(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제29조(대행의 의회 동의), 제30조(대행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및 제32조(준용)

- 대행의 적정성 검토, 대행의 의회 동의, 대행심의위원회 및 책임의 소재와 명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 의와 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군수는 대행기

관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을 규정함(안 제31조).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서 대행에 관하여는 공공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2조).

제정안
제4장 대행 제28조(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29조(대행의 의회 동의)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하려면 해당 대행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행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대행에 대하여는 해당 대행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무의 내용 4. 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28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대행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대행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행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대행심의위

원회(이하 “대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대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위탁”은 “대행”으로, “공공위탁위원회”는 “대행위원회”로 본다.

제3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 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32조(준용)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 및 “공공위탁”은 “대행”으로, “수탁기관”은 “대행기관”으로, “위탁사무”는 “대행사무”로, “위탁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위탁비용”은 “대행비용”으로, “위탁기간”은 “대행기간”으로 본다.

⑩ 제33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3조).

제정안
제5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 제정안 시안

예산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군수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군수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6. “대행기관”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이하 “수탁·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8. “재위탁”이란 위탁 또는 대행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대행기관과의 위탁 또는 대행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거나 대행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위탁, 민간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위탁

제4조(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책임행정의 보장성

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공공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위탁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공공위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대행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공공위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공공위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공위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위탁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⑨ 위원장은 공공위탁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수탁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위탁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위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⁴²⁾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공위탁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위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위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위탁(재계약과 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공공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공위탁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공공위탁에 대하여는 해당 동공공위탁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의 선정방식

8.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 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군수는 공공위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등) ① 수탁기관 선정은 일반경쟁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위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를 말한다)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공공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사무의 명칭과 그 내용

4. 위탁기간

5. 위탁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수탁기관의 준수사항

8.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9.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계약의 취소·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1. 그 밖에 계약 해석, 시설 운영 등 공공위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 ① 제11조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3조(재계약 등) ① 군수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조치의 이행 결과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3. 그 밖에 공공위탁·대행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제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1조에 따른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

였을 경우

5.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6. 수탁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 등 비위 발생 또는 위탁사무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위탁시설(장비·물품 포함한다)을 원상회복하게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 군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환수 및 관련 서류 일체를 반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공공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공공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6조(수탁기관의 준수사항) ① 수탁기관은 조례 및 위탁계약서를 준수하고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17조(비용 부담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위탁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정산 및 실적보고 등)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 군이 부담한 위탁비용의 정산 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비용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

는 경우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편람 등) ① 군수는 사무를 공공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처리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에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감사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및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에 따른 조

치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평가 등) ① 군수는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이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성과평가 지표에 수탁기관 근무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민간위탁

제2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소관 자치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25조(의회 동의 등) ① 군수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재계약과 재위탁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해당 민간위탁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 위탁·대행의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민간위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민간위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위탁”은 “민간위탁”으로, “공공위탁위원회”는 “민간위탁위원회”로 본다.

제27조(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위탁”은 “민간위탁”으로 본다.

제4장 대행

제28조(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사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29조(대행의 의회 동의) ① 군수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대행하게 하려면 해당 대행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행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된 대행에 대하여는 해당 대행과 관련된 다음 연도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무의 내용
4. 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28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대행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30조(대행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대행하게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행사무별로 해당 부서에 대행심의위원회(이하 “대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대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위탁”은 “대행”으로, “공공위탁위원회”는 “대행위원회”로 본다.

제31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를 책임은 대외적으로 군수에게 있다. 다만, 군수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제32조(준용)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 및 “공공위탁”은 “대행”

으로, “수탁기관”은 “대행기관”으로, “위탁사무”는 “대행사무”로, “위탁사업”은 “대행사업”으로, “위탁비용”은 “대행비용”으로, “위탁기간”은 “대행기간”으로 본다.

제5장 보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된 위탁·대행 또는 재계약·재위탁된 사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만료 등으로 재계약, 재위탁 및 재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② -----.

제3절 행정사무감사 시 견제·감시 방안

예산군수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예산군의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

42) 예산군에 각종 위원회에 적용될 기본조례인 「예산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분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조직(채용, 인사, 위원회, 복무, 규정), 재정(예산, 회계, 후원금, 법인전입금, 계약), 재산(시설관리, 물품관리), 행정(민간위탁사무) 등으로 분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기간에 처리된 사무(사업)에 대한 사후감독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를 적발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위탁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⁴³⁾

1. 수탁기관의 인사·회계 등 적정 여부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제대로 수행(시설운영 등)하려면 적절한 인력과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시설기준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수탁기관은 직원의 채용과 관리, 인력승계, 근로기준준수(노동관계법령), 조직 설치·운영 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 직원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비정규직이 과다하게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관한 문제나 미흡한 것이 없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그 외에 수탁자가 인력과 조직,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여 위탁금이 낭비되고 있는지 여부,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주민의 민원발생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한다.

2. 사업제안서/계획서 내용 이행 여부

수탁자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사업제안서(응모 시 제출), 사업계획서, 사무편람(단체장 승인)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서로부터 사무처리지침을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 내용에는 수탁자가 수행(처리)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있고, 사업계획서나 위수탁협약서 등에 따라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수탁자가 사업계획서와 사무처리지침, 사무편람에 있는 내용을 제

43) 최민수, 앞의 책, pp.106.~110.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의무(준수)사항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3. 민간위탁금 집행과 정산 적정 여부

지방의회에서는 수탁자가 민간위탁금을 교부해 준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위탁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하면, 위탁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이다. 민간위탁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회계처리가 복잡하므로 공인회계사 등의 검사를 거치고 있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불용이나 목적 외 집행에 대해 정산하여 환수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히, 수탁자가 주민으로부터 사용료나 이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위수탁협약 대로 정산 처리하고 있지 확인해야 한다. 민간위탁금을 사후에 정산하려면 위수탁협약서에 정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산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4. 위탁사업의 성과평가 적정 여부

가. 자치단체의 종합평가 적정 여부

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부실한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민간위탁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이는 위탁사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중간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탁기간 종료되기 전에는 종합적인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이 평가내용에는 근로조건 등 종사자 처우개선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성과평가는 평가항목과 배점 등 기준이 적절해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와 종합성과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성과평가 시 사전에 작성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평가내역이 공개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중간평가와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재계약/재위탁 여부 결정 시에 반영·활용해야 의미가 있다.

나. 수탁자 자체 성과목표 평가 적정 여부

수탁자는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된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일반적으로 위탁사무 평가를 위해 위탁사무의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목표달성 여부는 그 수준이 명확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목표 설정이 중요하므로 이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탁자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하는 위탁사무의 목표수준이 정확하고, 성과목표를 자체적으로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5. 지도·감독 및 감사 등의 적정 여부

가. 지도·감독의 적정 여부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사무(시설)가 협약서나 처리지침, 사무편람 등에 따라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수탁자는 위수탁협약서 이행은 물론 이행보증(보증금 또는 보험증권 제출)을 수탁자가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수탁자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지도·감독에 따른 조치와 이에 대한 공개를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나.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규정할 사항이나, 중앙부처와 같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중앙부처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위탁 조례에 매년 정기적인 감사 실시, 감사결과와 공개, 지방의회에 보고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수탁자 및 수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감사실시, 이행보증 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수탁기관의 수익성 과다 추구 및 부실운영, 민원발생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

6. 민간위탁 사무의 제3자 재위탁 여부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제3자에게 재위탁이 가능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법령 근거 없이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사례가 있다(조례에 근거 규정을 두는 사례).

지방의회에서는 수탁자가 법령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참고로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 처리하는 지방공기업은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역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5항).

제4절 예산심사 시 견제·감시 방안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이 매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탁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민간위탁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집행부와 수탁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위탁금 등에 대한 견제·감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⁴⁾

1. 민간위탁금 예산심사

가. 민간위탁금의 예산편성

자치단체에서 사무(시설)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처리비용이 소요되면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경비를 “민간위탁금(307-05)”, 또는 “민간위탁사업비(402-03)”로 편성한다.

“민간위탁금(307-05)”은 축제운영 등 일반적인 사무처리 위탁에 소요되

44) 최민수, 앞의 책, pp.116.~120., pp.142.~144., pp.169.~172.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는 경비이고, " 민간위탁사업비(402-03) " 는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이다. 그러므로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가 예산편성기준에 맞추어 편성되었는지 체크해야 한다.

나. 지방의회 동의 등 절차 이행 여부

예산안에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가 편성된 경우 먼저 어떤 사무(시설)의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사무(시설)의 민간위탁이 ① 신규,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신규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조례에 따라 사전에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한 위탁금도 사전에 의회 동의 또는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자치단체 조례 규정).

예산안에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또는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예산편성 적절 여부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년 1회 이상 감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런 절차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민간에 위탁할 사무에 대한 예산을 " 행사운영비 " 또는 " 지방보조금 " 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민간에 위탁할 대상사무의 예산이 행사운영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편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라. 위탁금액의 산정내역 및 적절성 체크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는 세부사업별로 예산안에 편성한다. 이는 수탁자에게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다. 즉, 민간위탁 원가를 예산에 편성한 것이다.

따라서 위탁금 예산은 먼저, 산출내역(인건비, 사업비, 재료비 등 내역)을 체크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을 원가산정내역과 비교하면 위탁금 산정의 적절성을 체크할 수 있다.

특히, 특정 민간위탁 사무(시설)에 대한 위탁금이 매년 증가하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체크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종사 직원의 인건비 및 후생복지비 수준과 인상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 외에 민간위탁금의 산정기준, 산정주체(공무원, 전문업체 여부) 등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마.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수입금 고려 여부

수탁기관이 민간위탁 사무(시설)를 처리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용료 및 사용료 등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자체수입을 제외하고 위탁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그런데 자체수입을 적게 계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에 따른 자체수입액이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그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바. 위탁사무(시설)별 위탁금액 비교

자치단체 예산에는 각각의 민간위탁 사무(시설)에 대한 위탁금이 편성되어 있다. 민간위탁 사무 유형이 유사하고 규모가 비슷하면, 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의 액수도 비슷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사무(시설)의 위탁금액 수준을 이와 유사한 사무(시설)에 대한 위탁금액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다른 자치단체에 예산에 편성된 위탁금액과 비교도 바람직하다. 이런 비교를 통해 특정 사무(시설)의 위탁금액의 과다·과소 여부 체크가 가능하다.

사. 결산실적 반영 여부 체크

민간위탁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 이내이고, 위탁기간 동안 위탁금이 매년 교부·집행된다. 그러므로 다음연도 위탁금액은 지난해의 결산실적을 반영해야 한다. 위탁금의 일부가 불용 또는 반환되었다면, 다음 연도 위탁금 편성 및 심의 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무(시설)별 위탁금 심사 시에는 해당 위탁금의 결산실적과 집행내역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2.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예산심사

가. 예산편성 근거 적정 여부

공공위탁에 대한 예산은 “공기관등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308-10)”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로 편성한다. 그런데 공기관등 위탁사업비에 민간위탁 형식의 위탁금이 편성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체크해야 한다.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예산편성 대상사무(사업)는 지방공기업(정부공사),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단체) 등의 설치 근거 법령 및 조례에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나. 공기관등 위탁사업의 적정 여부

예산에 공기관등 위탁사업비가 편성되었다면,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단체)과 위탁협약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위탁 사업(사무)에 대한 목적, 집행주체와 협약방법 및 내용, 사업(사무) 범위, 기간, 규모(예산금액) 등에 대한 적절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체크해야 공공위탁 대상사무(사업) 및 수탁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다. 공기관등 위탁사업비의 예산액수 적정 여부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는 수탁기관에 위탁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다. 구체적인 예산금액은 위수탁협약을 맺을 때 결정된다.

특정 사무(사업)의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는 먼저 산출내역(인건비, 사업비, 재료비 등 내역)이 적절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한, 공공위탁에 따른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했는지, 자체수입액이 적게 계상되었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유사한 사무(사업)에 대한 공기관등 위탁사업비와 다른 자치단체의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를 비교하여 예산금액의 적정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3. 대행사업비 예산심사

가. 대행사업비 예산편성 항목 적절 여부

자치단체에서는 대행사업에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 대행자에게 경비를 지급한다. 다만, 대행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행사업비 예산은 "민간위탁금(307-05)과 민간위탁사업비(402-0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등으로 편성한다.

따라서 대행사업비가 적절한 예산 항목(편성목과 통계목)에 편성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산 항목에 따라 정산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 대행사업 예산금액의 적정 여부

대행사업 예산(민간위탁금 등)은 대행기관에 대행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 대행료(위탁금원가) 내역을 편성한 금액이다. 먼저, 대행사업비에 대한 금액 규모와 산출내역(인건비, 사업비, 재료비 등 내역)이 적절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대행사업비는 전문용역기관에서 산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원가계산 내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행사업에 따른 자체수입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했는지, 자체수입액을 적게 계상하였는지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그 외에 유사한 대행사무(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와 다른 자치단체의 대행사업비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다. 대행사업비 예산액 증가 사유 체크

대행사무(사업)는 일정기간 계속되므로 매년 대행사업비가 예산에 편성·집행된다. 이 경우 특정 사업(사무)에 대한 대행사업비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하여 증가한 경우 그 사유와 구체적인 내역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라. 대행사업의 “ 독립채산제 ” 운영 여부

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분뇨 수거, 운반, 청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사용료 등)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받아 대행사업비(대행료)로 충당하는 “ 독립채산제 ”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행사무량(범위)에 비하여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사용료)수준이 과다·과소한 것이 아니지를 체크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 독립채산제 ” 를 “ 총액도급제 ” 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5절 결산심사 시 견제·감시 방안

1. 민간위탁금 결산심사

가. 위탁금 집행내역 체크 및 정산 적절성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금을 교부할 때에는 세부적인 지출항목(인건비, 사업비, 재료비, 사업비, 홍보비 등)과 그 한도 금액을 정해서 교부한다. 이를 “ 예산부기내역 ” 이라 한다.

결산심사 시에는 예산부기내역대로 집행했는지, 목적 외 집행 여부, 예산용도의 전용 또는 변경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교부된 위탁금이 불용되거나, 사업계획(또는 사무처리지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정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일반관리비(회의비, 홍보비 등)와 간접노무비(후생복지비 등)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나.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금 중에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탁금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전문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수탁자가 결산서와 회계감사보고서를 단체장에 제출하면, 이를 지방의회에도 제출하도록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행사·축제 원가내역(집행내역)의 적정성

자치단체에서는 행사·축제에 대한 위탁금의 집행내역(원가)을 자치단체 재정고시를 통해 공개한다. 축제·행사원가는 ① 인건비, ② 행사직접비, ③ 대외홍보비, ④ 시설장비비(임차료 포함), ⑤ 참가자보상비, ⑥ 감가상각비, ⑦ 기타경비로 분류하여 집행금액을 기재한다.

행사·축제 원가내역을 위탁금 교부 시 “예산부기내역” 및 사업계획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외홍보비, 참가자보상비의 과다 집행 여부를 체크한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행사·축제에서 매년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 철거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지 여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라. 위탁에 따른 자체수입의 정산 여부

민간위탁 사무(시설)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자체수입은 교부조건 또는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집행한다. 자체수입 규모에 따라 교부된 위탁금을 정산해야 한다. 사후에 정산하려면 위수탁협약서에 정산·반환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자체수입을 수탁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시설)의 자체수입 규모가 적절하게 산정되고, 위탁금 정산과 인센티브 지급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마. 개산계약의 위탁금 정산 여부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금을 명확하게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산계약(대략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하고, 추후에 정산함)”을 한다. 개산계약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교부된 위탁금에 대해 정산하고 미집행액은 환수해야 한다. 따라서 개산계약인 경우 위탁금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2.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결산심사

가.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집행 적절 여부

공기관등 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심사 시에는 먼저 공공위탁 사업(사무)의 집행상황, 위탁사업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 사업추진 실적 등을 확인·점검해야 한다. 특히,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의 경우 위탁사업이 미준공되었는데 위탁사업비를 미리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 이는 위탁사업비의 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다.

그리고 결산연도에 교부한 공기관등 위탁사업비의 예산 부기내역(구체적 항목별 지출 한도 기재)을 체크해야 한다. 예산 부기내역과 실제 집행내역을 비교하면, 목적 외 집행이나 용도변경 등의 판단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관리비(회의비, 홍보비 등)와 간접노무비(직원 후생복지비 등)가 소속 직원에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나. 공기관등 위탁사업비의 정산 적절 여부

공공위탁 사업(사무) 종료 후에는 위탁사업비 정산과정을 거친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산은 “민간경상보조사업(307-02)”의 예와 같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정산은 “민간위탁금(305-05)”의 예에 따라 하여야 한다.

공공위탁 사업내용과 예산이 ① 사업계획서(또는 사무처리지침 등)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② 범위(규모)가 변경되거나, ③ 불용이 발생한 경우에 적절하게 정산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위탁금 정산에 대한 사후정산 근거를 위수탁협약서에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3. 대행사업비 결산심사

가. 대행사업비 집행의 적절 여부

대행사업비 결산심사 시에는 예산집행 시 교부한 예산 부기내역(예산 항목별 집행내역 표시)대로 집행했는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 또는 변경하여 집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체크해야 한다. 특히, 일반관리비(회의비, 홍

보비 등)와 간접노무비(직원 후생복지비 등)가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산심사 시에는 대행사업의 추진내역, 목적 달성 및 성과(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대행사업(사무)을 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예산집행 내역과 연계하여 체크할 필요가 있다.

나. 대행사업비 정산 적절 여부

대행사업비는 일정한 사무(사업)의 대행처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집행 후에는 정산해야 한다. 대행사업비가 불용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무(사업)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적절하게 정산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대행 조건이나 환경이 변경되어 대행 사무(사업) 규모나 범위가 축소되었음에도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사후정산을 위해서는 대행(위탁)협약서에 반드시 대행사업비 정산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6절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검토

1.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군의의회에서 민간위탁 및 공공위탁, 대행사무에 대해 군정질문 및 질의,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안 심사 등을 통해 견제·감시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대행사무의 건수와 이에 따른 위탁예산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 예산에서 12.7%나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군의의회에서 위탁 및 대행사무에 대해 종합적·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매년 1회 정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 운영 방안

예산군의의회에서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운영방안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보고, 질의, 현장 확인, 개선방안 도출 등의 활동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별위원회 운영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악하고 논의된 사항(문제)을 다른 의정활동(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요약 및 결론

이번 연구는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로서 예산군의 사무위탁 운영실태 분석과 예산군의회 의원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을 통하여 공공·민간위탁의 진단과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1절 예산군 사무위탁 운영실태 분석

예산군 사무위탁 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항목 2개, 분석지표 8개, 세부분석지표 35개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예산군의 사무위탁이다. 사무위탁은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현황을 보면, 민간위탁 37건(39.0%), 공공위탁 54건(56.8%), 대행 4건(4.2%)으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공공위탁사무가 가장 많다.

민간위탁은 37건으로 국별로 보면, 행정복지국 14건(37.8%), 산업건설국 21건(56.8%), 사업소 및 보건소 각각 1건(5.4%)이다. 예산군 민간위탁 사업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행정복지국 분야이며 그중에서 가족지원과가 5건으로 가장 많다.

공공위탁은 54건이다. 공공위탁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예산군수의 권한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위탁이다. 공공위탁은 산업건설국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농정유통과는 24건(44.4%)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 예산황새고향 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 130억 4,200만원, 대술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58억 1,700만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연건개선사업 등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예산군의 대행은 4건이다.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맑은누리센터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위탁관리이다.

민간위탁 사업형태는 시설과 사무가 혼합된 시설사무형 위탁이 18건(56.25%), 예산만 지원하는 사무형 위탁이 12건(37.50%), 행정재산인 예산군 소유시설이나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시설 등의 관리가 수반되는 시설형 위탁이 2건(6.25%)이다.

둘째, 민간위탁 사업형태이다. 민간위탁의 수탁기관 형태는 32개 중 법인 등 단체가 28개(87.50%), 개인 4개(12.50%)로 대부분이 법인 등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유형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일반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 총 7개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일반기업 9개(28.12%)로 가장 많고, 비영리법인 8개(25%), 공공기관 5개(15.63%) 등이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위탁사무 32개 중 공개모집 17개(53.12%), 수의계약 15개(46.88%)이다.

셋째, 사무위탁 예산 현황이다. 예산군의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 예산 총액은 95건 337,604백만원이다. 그 중 공공위탁 예산이 288,533백만원(85.5%)으로 가장 많고, 민간위탁 39,411백만원(11.7%), 대행 9,660백만원(2.8%)이다. 예산군의 민간위탁 예산 현황을 보면, 위탁사업 건수 37개 총 39,411백만원(2023년 기준)이며, 사업별 평균예산은 10억 6,500만원이다. 민간위탁은 13개 부서에서 37개 사무를 31개 기관에 위탁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산군의 공공위탁 예산 현황을 보면, 위탁사업 건수 54건 총 위탁예산 2,885억 3,300만원이며, 수도과 12건 2,162억 1,000만원, 농정유통과 19건 452억 9,500만원이다. 공공위탁은 10개 부서에서 54개 사무를 9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산군의 대행 예산은 대행사업 건수 4건 96억 6,008만원이다. 맑은누리센터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에 대행하고 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폐기물관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세움환경에 대행시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넷째, 유형 자치단체 민간위탁금 비교이다. 지방재정분석 유형분류 결과 예산군은 군(82개) 중에서 I 유형(21개)에 속한다. I 유형 중에서 특히, 재정 여건이 비슷한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 전북 완주군, 전남 화순군, 경남 거창군 총 8개 군의 2023년 세출예산 본예산 기준 위탁예산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2023년도 세출예산 대비 사무위탁 예산은 인천 강화군 13.81%, 충남 예산군 12.72%, 충남 홍성군 9.54%, 전북 완주군 8.81%, 경남 거창군 7.14%이다. 충남 예산군은 비교 대상 군 중에서 두 번째로 사무위탁 비중이 높다. 특이한 것은 부산 기장군은 민간위탁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다.

예산군의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은 2021년 14.60%로 2020년도 - 13.15%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으며, 유형평균 - 2.1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의 단순 비교는 커다란 의미는 없지만, 위탁예산과 비교해보면, 예산군은 민간위탁금 비율이 12.72%로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섯째, 민간위탁 운영 현황이다. 2023년 기준 예산군 민간위탁 기간 현황을 보면, 1년 이상~3년 미만 10건(31.26%), 3년 이상~5년 미만 11건(34.37%), 5년 이상~10년 미만 11건 (34.37%)이며, 10년 이상은 없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023년도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37건 중 공개모집 17건(45.95%), 자격제한 또는 수의계약 20건(54.05%)이다. 수의계약은 비영리법인 등 단체 14개(70%), 일반기업체 6개(30%)로 대부분이 비영리법인 등 단체와 수의계약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2019년 5건(신규 4건, 재위탁 1건), 2020년 2건(재위탁 1건, 재계약 1건), 2021년 4건(재위탁 4건), 2022년 6건(신규 3건, 재위탁 2건, 재계약 1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15개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예산군노인요양원 운영 64점, 예산예당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예산 C등급, 예산신암관작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신암 D등급으로 3개

수탁기관만 보통 이하이고, 나머지 12개 수탁기관은 우수하거나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업무의 비용절감이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위탁료 산정기준이 필요하다. 위탁료 산정기준을 보면, 32건 중에서 법령 7건, 중앙정부 지침 7건, 기타 7건, 용역보고서 6건이다.

민간위탁 관리·감독 근거로는 조례/규칙 17건(53.12%)으로 가장 많고 법령 7건(25.0%), 위탁계약서 4건(12.5%)이다.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 관리·감독 실적을 보면 32개 위탁사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실시하였다. 관리·감독 내용은 정산검사, 안전점검, 회계감사, 수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6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 현장에서 주의/시정조치를 하였고, 수도과의 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상의 미비 사항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취소 건수가 1건도 없었다. 민간위탁 취소 사유는 주로 수탁기관 준수사항, 주요 위탁계약 조건, 위탁사무 수행능력 부족, 수탁기관의 해지요구 등이 될 것이다.

여섯째, 민간위탁 관련 제도이다.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과 행정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아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산군에는 이러한 지침 없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산군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법인, 단체, 회사, 개인 등 다양하다. 예산군 민간위탁기관의 예산 및 회계·결산의 명확성·공정성을 기하

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 및 지침(민간위탁 주관부서의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 등), 위탁계약서에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탁기관용 지침이 필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회계 인사·노무에 관해서 공통적으로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이러한 지침 없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수탁기관을 이용하거나 수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산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제2절 민간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

첫째, 예산군의회의에서 예산군 사무의 위탁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 분석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본회의/위원회의 회의록을 분석하였다. 이 중 본회의 19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2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의원의 지적사항, 건의사항, 요구사항, 의견 등과 관련된 유의미한 위탁은 검색된 총 회의록 중 무의미한 민간위탁을 제외한 총 70건의 회의록으로 집계하였다.

의원의 발언내용은 위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보다는 민간위탁의 운영 가운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필요사항, 건의사항, 촉구사항, 민원 등 현안사항 등이다. 유의미한 의원의 발언 내용을 위탁의 종류에 따라 의원이 궁극적으로 발언하고자 하는 취지를 분석·추정하여 연구 목적에 반영 가능한 주제 형태로 정리하였다.

둘째, 의정활동 분야별 견제·감시 역할 분석이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현황이다. 2018. 10. 15. 행정복지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적합하므로 당연히 민간위탁을 줘야 되며, 오히려 집행부에서 관리가 잘 되도록 격려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 2018년~2021년(4년

간) 처리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 건수는 28건 모두 재위탁으로 처리하면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감사결과이다. 제8대 예산군의회에서 4회(2018~2021년)에 걸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민간위탁과 관련된 회의록 검색 건수는 28건이며, 이 중 민간위탁과 관련된 유의미한 감사도 28건이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실제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의 감사 취지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실제 감사와는 다르게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된다면 감사 취지가 왜곡되고, “감사 따로 감사결과보고서 따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제8대 의회 기간 중 위탁과 관련된 감사내용은 총 20건으로 2018년 6건, 2019년 4건, 2020년 6건, 2021년 4건이다. 민간위탁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 유의미한 건수 28건과 실제 감사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회의록에는 나타났지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등 안전심사 시 민간위탁과 관련된 발언이다. 회의(본회의/상임위/예결특위)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한 회의 일수는 총 42일이며, 본회의 19회, 행정복지위원회 5회, 산업건설위원회 1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회이다. 산업건설위원회가 회의 일수가 많은 이유는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와 위탁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의회의 본회의 회의록 19건, 행정복지위원회 5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회의록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대부분의 발언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과정에서 운영에 관한 문제가 주로 논의되고, 위탁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발언 취지도 대부분 세출예산 심사와는 관계없이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된 질의였다.

결산의 심사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사항이다.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의록을 통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결산심사 시 논의된 발언 내용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지적사항이다. 제8대 의회

본회의 중 군정질문 13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6건에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유의미한 발언 회의 일수는 19회 있었다.

제3절 민간위탁에 대한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제안

1. 민간위탁 운영실태 개선

첫째,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개선이다.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위탁 관리기준(지침) 제정이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 그 외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규정, 절차, 유의사항 등을 담아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수탁기관 관리·감독 점검표 작성이다.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8조에서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점검표가 필요하다. 예컨대 민간위탁금 관리를 위해서는 입출금 통장 확인,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일일결산 등 기재사항 누락 등 확인 점검표가 작성되어 있다면 손쉽게 점검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지표 개발이다. 성과평가를 수탁기관 유형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성과지표는 성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무만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과 사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 취약계층만 이용하는 시설형 위탁 등 다양한 형태에 맞게 맞춤형으

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맞게 맞춤형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제도 개선이다. 민간위탁제도는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한정된 예산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민간위탁 예산을 줄이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인건비 때문이다. 인건비를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승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수탁기관이 바뀌어도 인력이 그대로 승계될 경우에는 대표만 바뀌는 민간위탁이 된다.

민간위탁은 예산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조성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칙과 기준 없는 고용승계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민간위탁 예산이 증가한다면 재고하여야 한다. 예컨대, ① 위탁사무의 운영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② 위탁사무 일부가 폐지되는 경우, ③ 예산이 변경되는 경우, ④ 공개모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 ⑤ 필요 인력 감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등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고용승계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섯째, 위탁자 및 수탁자 전문교육 강화이다. 위탁예산의 건전한 운영으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위탁예산의 부정사용, 목적 외 사용, 위법한 회계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위탁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위탁업무 담당자와 수탁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 만족도 조사이다. 민간위탁 사무 관련 업무 등 수행된 유·무형 서비스에 대해 그 서비스가 완료된 후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비용, 응대시간, 서비스요원의 전문성과 친절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과평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산군에서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면서 이용자에게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 번째, 위탁협약서 보완이다. 위탁협약서에는 사무편람 작성 승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예산군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기별, 월별,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군의 예산과 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그리고 위와 관련하여 예산군 차원에서 표준 위탁협약서를 작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산군은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된다는 내용이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산군은 수탁자가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에 관한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예산군은 공사 및 용역계약에 대해서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 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사무위탁 관련 조례 제·개정

현재 예산군에는 위탁에 관하여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군수에게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의회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에 관한 예산군의 회의 견제와 감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무의 공공위탁과 대행에 관하여는 대상사무의 기준, 의회 동의,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소지가 있고, 의회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예산군 민간위탁조례에서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① 의회의 동의 후 중요사항이 변경되어도 이와 관련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규정이 없고, ②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

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근거가 없고, ③ 위탁사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이 작성하여야 할 사무편람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공공위탁과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를 조속히 제정함으로써 공공위탁과 대행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관리되게 할 필요가 있고, 예산군 민간위탁조례를 보완하여 위탁사무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예산군 사무위탁 관련 조례를 개선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안이 있다. 제1안은 앞의 제2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위탁에 관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이와 별개로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가칭)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앞의 제3유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군 행정사무의 공공위탁·민간위탁 및 대행을 통합하여 (가칭) “예산군 사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다.

3. 행정사무감사 시 견제·감시 방안

예산군수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고,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예산군의 최근 3년간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조직(채용, 인사, 위원회, 복무, 규정), 재정(예산, 회계, 후원금, 법인전입금, 계약), 재산(시설관리, 물품관리), 행정(민간위탁사무) 등으로 분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기간에 처리된 사무(사업)에 대한 사후감독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적극적으로 민

간위탁과 관련된 문제를 적발하여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위탁사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민간위탁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인사·회계 등 적정 여부, 사업제안서/계획서 내용 이행 여부, 민간위탁금 집행과 정산 적정 여부, 수탁사업의 성과평가 적정 여부, 지도·감독 및 감사 등의 적정 여부, 민간위탁 사무의 제3자 재위탁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예산심사 시 견제·감시 방안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이 매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탁비용을 예산에 편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는 민간위탁금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집행부와 수탁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지방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시 위탁금 등에 대한 견제·감시 방안을 위해서는 민간위탁금, 공기관등 위탁사업비, 대행사업비 구분하여 엄격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5. 결산심사 시 견제·감시 방안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금을 교부할 때에는 세부적인 지출항목(인건비, 사업비, 재료비, 사업비, 홍보비 등)과 그 한도 금액을 정해서 교부한다. 이를 “예산부기내역”이라 한다. 결산심사 시에는 예산부기내역대로 집행했는지, 목적 외 집행 여부, 예산용도의 전용 또는 변경 여부 등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교부된 위탁금이 불용되거나, 사업계획(또는 사무처리지침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정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일반관리비(회의비, 홍보비 등)와 간접노무비(후생복지비 등)가 제대로 집행되는지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6.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예산군의회에서 위탁사무(민간·공공·대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매년(1회 정도) 위탁사무 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보고, 질의, 현장 확인,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 부록

1. 참고 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1),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국민권익위원회(2018),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김영우 외(2021),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제도 개선방안』, (주)가치경영원
- 김정혜(2015), 『민간위탁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류숙원(2013),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관리 실태』, 감사연구원
- 보건복지부(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 보건복지부(2022),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부천시(2020), 『민간위탁 감사 사례집』
- 서울연구원(2018), 『민간위탁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 서울특별시(2021),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편람』
- 서울특별시(202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서울특별시(2022),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 및 관리지침』
- 손혁재 외(2018) 『경기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조사 및 운영개선방안 수립 연구』, 경기연구원
- 정병순 외(2018), 『협치시정 구현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제 실태와 혁신방안』,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인재개발원(2022), 『2022 공통교재 회계실무』
- 최병근(202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7), 『사회적협동조합 민간위탁 매뉴얼 공공기관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4),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산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

행정안전부(2020),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행정안전부(2021),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행정안전부(2021),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행정자치부(2013),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실무편람』

2. 인터넷 자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예산군의회, <https://www.councilyesan.go.kr//>

예산군청, <https://www.yesan.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지방자치인재개발원, <https://www.logodi.go.kr>

지방재정365, <https://lofin.mois.go.kr>

충청남도청, <http://www.chungnam.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i.go.kr>

3. 예산군 공공위탁 현황(2023. 6. 30.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사무명	수탁기관	위탁액	위탁기간	선정방법	위탁근거
계	10	54	9		-	-	-
1	기획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한국지역정보 개발원	58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2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측량	한국국토 정보공사	359	2023.2.8~ 2023.12.31.	차격제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및 제5조의2제1항
3	가족지원과	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운영대행	(재)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521	매년	수의계약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4	가족지원과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운영대행	(재)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556	매년	수의계약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5	가족지원과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운영대행	(재)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225	매년	수의계약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6	가족지원과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대행	(재)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137	매년	수의계약	예산군 청소년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사업)
7	농정유통과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13,042	2021.~ 2025.	수의계약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 법률 제19호및21호
8	농정유통과	하포리 농어촌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1,972	2021.4~ 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9	농정유통과	화산리 농어촌취약지역생활 여건 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1,946	2021.4~ 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0	농정유통과	마사리 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500	2021.4~ 2023.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1	농정유통과	계정2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600	2021.4~ 2023.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2	농정유통과	신양면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2,000	2022.1~ 2025.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3	농정유통과	신종1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1,000	2022.3~ 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4	농정유통과	상하1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200	2022.3~ 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5	농정유통과	만사리 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200	2022.3~ 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6	농정유통과	증곡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500	2022.3~ 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7	농정유통과	장산2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500	2022.3~ 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8	농정유통과	하평리 농어촌취약지역생활 여건 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1,896	2022.5~ 2025.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19	농정유통과	예가정성 농특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재)충남창조 경제혁신센터	120	2023.3.30~ 2023.12.31.	수의계약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20	농정유통과	공기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110	2023.4.5~ 2023.12.20.	해당없음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지침
21	농정유통과	대술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5,817	2018.1~ 2023.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22	농정유통과	신양면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4,000	2019.2~ 2023.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23	농정유통과	오가면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4,000	2019.2~ 2023.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24	농정유통과	황계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500	2020.4~ 2023.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25	농정유통과	마진1리농어촌취약지역생활 여건개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 지사	2,092	2020.6~ 2023.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26	농정유통과	대림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500	2021.4~ 2023.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27	농정유통과	계정2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600	2021.4 ~ 2023.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28	농정유통과	신양면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00	2022.1.~ 2025.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29	농정유통과	신종1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000	2022.3.~ 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30	농정유통과	상하1리마을만들기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0	2022.3.~ 2024.12.	수의계약	농어촌정비법 5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31	축산과	내수면수산생태 기반구축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5,400	2021.4.15.~ 2025.12.31.	수의계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8조
32	산림복지과	내포문화숲길 운영·관리 위탁사업	한국농산트레킹 지원센터	378	2023.2.1.~ 12.31.	수의계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33	건설교통과	고덕면 상공리 배수로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400	2022.12.13.~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34	건설교통과	삼포 송산리 보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00	2022.9.29.~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35	건설교통과	오가 신원지구 배수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00	2022.9.29.~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36	건설교통과	소규모옹배수로 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413	2023.1.1.~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37	건설교통과	수리시설 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50	2023.1.1.~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38	건설교통과	농업용 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285	2023.1.1.~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39	건설교통과	기계화정작로 확보장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1,472	2023.1.1.~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40	건설교통과	농어업기반정비 (대규모정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450	2023.4.3.~ 2023.12.31.	수의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41	도시건축과	주거급여사업-수선유지급여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800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주거급여법 제8조
42	안전관리과	배수문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41.38	2023.01.~ 2023.12.	수의	지방자치법 117조, 지방재정법 17조
43	수도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한국수자원공사	27,450	2018.01.01.~ 2023.08.23.	수의계약	수도법 제23조
44	수도과	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영향조사	한국농어촌공사	650	2023.02.17.~ 2023.12.31.	수의계약	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45	수도과	예산-당진공업용수도 운영관리 위·수탁	한국수자원공사	323 (11,840)	2017.01.01.~ 2026.12.31.	수의계약	수도법 제23조
46	수도과	황계신대지구 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10,118	2021.08.~ 2023.08.	수의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47	수도과	임침원평지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12,543	2022.07.~ 2024.06.	수의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48	수도과	예산읍 1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47,820	2018.06.~ 2023.07.	수의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49	수도과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47,294	2019.06.~ 2023.06.	수의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0	수도과	예산읍 3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23,186	2020.12.~ 2025.06.	수의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1	수도과	평촌,노화지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15,347	2017.07.~ 2025.06.	수의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2	수도과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한국환경공단	19,804	2018.06.~ 2025.12.	수의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3	수도과	하포,용동지구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	한국환경공단	11,634	2019.08.~ 2025.06.	수의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54	수도과	내포신도시주변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한국환경공단	14,124	2019.07.~ 2025.06.	수의계약	하수도법 제74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4. 예산군 민간위탁 현황(2023.6.30.기준)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	사무명	수탁기관	위탁액	위탁기간	선정 방법	위탁근거
계	13	37	31	39,411	-	-	-
1	총무과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예산군청직장어린이집	328.6	2021.1.1.~ 2023.12.31.	공개모집	영유아보육법 제14조
2	총무과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사)예산군새마을회	0	2022.1.1.~ 2023.12.31.	공개모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3	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충남예산지역자활센터	1,416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4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 관	(사)예산군 장애인 연합회	1,600	2022.1.1.~ 2026.12.31.	수의계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5	주민복지과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 장	(사)예산기독교 연합복지재단	493	2022.5.1.~ 2026.12.31.	수의계약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6	가족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수덕	871	2020.1.1.~ 2024.12.31.	공개모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 조례 제5조
7	가족지원과	예산군노인요양원운영	사회복지법인희망송산	-	2023.1.1.~ 2027.12.31.	공개모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예산군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8조
8	가족지원과	예산군시니어클럽운영	사회복지법인 수덕	310	2019.1.1.~ 2023.12.31.	공개모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9	가족지원과	예산공립어린이집 운영	이희섭(개인)	-	2022.9.1. ~2027.8.31.	공개모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10	가족지원과	예산군온종일초등돌봄 센터	은혜도서관	127	2022.1.1.~ 2024.12.31.	공개모집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 2항
11	문화관광과	예산황새공원 황새 사 육·연구	한국교원대산학 협력단 황새생태 연구원	272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12	문화관광과	전국황새모니터링사업	한국교원대산학 협력단 황새생태 연구원	120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 운영조례 제12조
13	문화관광과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예산문화원		2020.2.9.~ 2025.2.8.	수의계약	작은영화관운영관리 조례 제8조1항
14	교육체육과	예산군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순천향대학교산학협력단	216	2023.1.1.~ 2024.12.31.	수의계약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2
15	경제과	산업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위탁	(주)에코비트위터(주)두현이앤 씨	1,837	2021.1.1.~ 2023.12.31.	수의계약	물환경보전법 제48조
16	경제과	농공단지공공폐수 처리시설위탁	금강엔지니어링(주)	1,230	2021.1.1.~ 2023.12.31.	수의계약	물환경보전법 제48조
17	환경과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 관리	에이치엘에코텍(주)	5,159	2023.1.1.~ 2023.12.31.	공개모집	맑은누리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7조
18	환경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주)에코비트위터	2,547	2023.1.1.~ 2023.12.31.	공개모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 영 조례 제7조
19	환경과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주)제일환경	1,300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0	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주)세움환경	1,057	2023.1.1.~ 2024.12.31.	자격제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1	농정유통과	예산농산물	예산농금농업협동조합	-	2020.10.1~	수의계약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기본조례

		유통센터 민간위탁			2023.9.30.		제4조, 예산군 권역별 거점 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22	농정유통과	예산군행복마을 지원센터	사단법인 예산군 행복마을 네트워크	500	2022.1.1.~ 2024.12.31.	공개모집	예산군 행복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조례
23	축산과	한우광역브랜드육성	예산축산업협 동 조 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315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충청남도 축·산사업 시행지침
24	축산과	충남한우명품화지원	예산축산업협 동 조 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127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충청남도 축·산사업 시행지침
25	축산과	한우해군우농가육성	예산축산업협 동 조 합 대전세종충남협동조합	90	2023.1.1.~ 2023.12.31.	수의계약	충청남도 축·산사업 시행지침
26	산림녹지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예산군산림조합	4,278	2023.2.22.~ 2023.12.31.	수의계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27	건설교통과	예산군 특별교통 수단 운영	충남지체 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537	2022.01.01.~ 2024.12.31.	공개모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28	도시건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	58	2021.1.1.~ 2023.12.31.	공개모집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1항
29	산림녹지과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예산군산림조합	4,278	2023.2.22.~ 2023.12.31.	수의계약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30	건설교통과	예산군 특별교통 수단 운영	충남지체 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537	2022.01.01.~ 2024.12.31.	공개모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31	도시건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철거 업무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예산군지부	58	2021.1.1.~ 2023.12.31.	공개모집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1항
32	도시건축과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업무 및 옥외광고사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충청남도옥외광고협회	-	2021.1.1.~ 2023.12.31.	공개모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2항, 제12조 4항
33	도시건축과	예산군 도시재생 지원 센터 운영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608	2018.2.1.~ 2024.1.31	공개모집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지침 제3절 제25조 및 제26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34	수도과	예산군 공공하수 처리 시설 관리대행 용역	(주)에코비트위더 외 2개사	3,711	2021.01.01.~ 2023.12.31	자격제한 입찰	하수도법제19조2,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대행지침
35	수도과	내포신도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주)두현이앤씨 외 1개사	2,363	2022.01.01.~ 2024.12.31	자격제한 입찰	하수도법제19조2,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대행지침
36	관광시설 사업소	예산군내포보부상촌 관리 운영	(주)내포보부상촌		2023.5.25.~ 2026.5.24.	공개모집 (최초)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37	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조사 분석위탁운영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67,904	2023.3.1.~ 2023.12.31.	제계약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5. 대행 현황(2023.6.30.기준)

연 번	부서	대행사무명	대행사	근거규정	계약 방법	계약기간	예산액 (천원)	인건비 (천원)
1	환경과	음식물류폐 기물수집운 반민간위탁	(주)세움환경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입찰	2023. 1. 1. ~ 2024. 12. 31.	654,086 (인건비포함)	370,370
3	환경과	가축분뇨공 공처리시설 위탁관리	(주)에코비트위 터, 금강엔지니 어링(주), 부경엔 지니어링(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관리 및 운 영 조례 제7조	공개 모집	2021. 1. 1. ~ 2023. 12. 31.	2,547,000	601,675
4	환경과	분뇨처리시 설 위탁관리	(주)제일환경	분뇨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수의 계약	2021. 1. 1. ~ 2023. 12. 31.	1,300,000	476,338
합계							4,501,086	1,448,383